

세무상 기능통화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박명호 · 김태훈 · 정희선

2009. 8

세 법 연 구 센 터

목 차

I. 서 론	7
II. 우리나라의 기능통화제도	9
1. 기업회계	9
가. 기능통화제도 도입	9
나. 기능통화제도 개관	10
2. 법인세법	19
가. 기능통화제도의 도입 여부	19
나. 국내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	19
다.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	20
III. 주요국의 기능통화제도	23
1. 미 국	23
가. 개 관	23
나. 기능통화의 개념	24
다. 국내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	29
라. 해외 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	44
2. 호 주	53
가. 개 관	53
나. 기능통화의 개념	53
다. 국내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	54
라. 기능통화환산 규정(Functional Currency Rules)	62
3. 국제비교	71
가. 세무상 기능통화제도	71

나. 국내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	72
다.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	74
IV. 세무상 기능통화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	77
1. 세무상 기능통화제도의 도입.....	77
가. 도입 필요성.....	77
나. 도입방법.....	78
2. 세무상 기능통화제도 적용시 고려사항.....	82
가. 재무제표 작성시점.....	83
나. 재무제표 환산시점.....	84
다. 과세소득 계산시점.....	86
3. 최초 적용기업 및 변경기업에 대한 고려사항.....	88
가. 기초 재무제표 환산시 적용환율.....	88
나. 기초 재무제표 환산시 외환차이.....	89
다. 세무상 기초 유보액 환산.....	91
V. 결 론.....	92
참고문헌.....	95

표 목 차

〈표 Ⅱ-1〉 보고기간 말의 외화환산방법.....	14
〈표 Ⅱ-2〉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방법.....	22
〈표 Ⅲ-1〉 조세관련금액의 환산방법.....	60
〈표 Ⅲ-2〉 세무상 기능통화제도.....	72
〈표 Ⅲ-3〉 국내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	73
〈표 Ⅲ-4〉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	75
〈표 Ⅳ-1〉 세무상 기능통화제도의 도입 방안.....	79
〈표 Ⅳ-2〉 기능통화제도 도입방안 순위.....	82
〈표 Ⅳ-3〉 원화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있는 세법규정 사례.....	87

I. 서론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2009년 1월 기능통화제도가 기업회계기준에 도입되었음
 - 기능통화제도의 도입은 해운업체나 항공사 등 외화거래의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오랜 관심사였음
 - － 동 업체들의 경우 재무제표를 원화로 작성하는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외화환산 손익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이 왜곡된다는 문제가 있음
 - 기능통화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환경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화거래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외화환산손익의 규모가 대폭 줄어 재무정보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그런데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능통화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기업이 회계상 기능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더라도 법인세 신고목적으로 원화를 기능통화로 한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즉, 기업회계상 기능통화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관련 처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이중장부 체제를 유지해야 하므로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보고서의 목적은 기업회계상 기능통화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외화환산 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해 참조하고자 미국과 호주의 기능통화 관련 세무상 처리방법을 살펴보는 것임
 - 법인세법상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 법인세 신고시 기준이 되는 재

무제표 및 외화환산방법 등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세무상 기능통화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Ⅱ장에서는 기업회계에서 도입된 기능통화제도에 대한 개관과 아울러 기능통화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행 법인세법에서의 외화환산방법에 대해 정리함
- 제Ⅲ장에서는 미국, 호주를 대상으로 주요국의 기능통화제도 현황을 비롯하여 기능통화제도하에서의 외화환산방법, 과세소득과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등에 대해 다룸
- 제Ⅳ장에서는 제Ⅲ장에서 조사한 세무상 기능통화제도의 적용 관련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우리의 과세실무에 적합한 세무상 기능통화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함

II. 우리나라의 기능통화제도

1. 기업회계

가. 기능통화제도 도입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2009년 1월 기능통화제도가 기업회계기준에 도입되었음¹⁾

□ 기능통화제도의 도입은 외화거래의 비중이 높은 해운업체나 항공사 등에서 오랜 관심사였음

○ 기능통화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기업의 주된 거래 통화가 무엇인지 관계없이 원화로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했음

－ 예를 들어, 달러 표시 부채의 경우 차입 당시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장부에 표시해 두었다가 연말 결산시점에서는 이를 다시 결산일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고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해야 하며, 추후 해당 부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는 상환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고 외화거래손익을 인식해야 함

○ 해운업체나 항공사 등과 같이 외화거래의 비중이 높은 경우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외화환산손익과 외화거래손익이 회계상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커 기업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이 왜곡된다는 문제가 있음

－ 특히 외화환산손익의 경우 실제 현금흐름과 관계없는 장부상 손익에 불과함

□ 기업회계상 기능통화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환경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

1) 기업회계기준 제69조의 2

○ 예를 들어,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해운업체가 그 주된 영업활동 환경이 국외이고 영업, 투자 및 재무활동 등에 대해 주요 거래통화로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경우 미국 달러를 기능통화로 사용할 수 있음

– 기능통화가 미국 달러인 경우 달러표시 부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산·부채를 모두 미 달러화로 표시해 두었다가 결산시점에 결산환율을 적용해 보고통화인 원화로 환산하면 됨

–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²⁾을 적용해 보고통화로 환산하면서 관련 환산차이를 기타포괄손익(자본항목)으로 인식하므로 환산차이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이와 같이 기능통화제도의 도입으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환경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화환산손익이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재무정보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나. 기능통화제도 개관

1) 기능통화의 정의

□ 기능통화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를 의미함³⁾

○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이라 함은 주로 현금을 창출하고 사용하는 환경을 말함

□ 기능통화 결정시 고려사항⁴⁾

○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

– 흔히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표시하고 결제하는 통화에 해당함

2) 단, 해당 기간 동안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3) K-IFRS 제1021호 문단8

4) K-IFRS 제1021호 문단9 및 문단10

-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주로 결정하는 경쟁요인과 법규가 있는 국가의 통화
-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드는 노무원가, 재료원가와 그 밖의 원가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
- 다음의 사항 역시 기능통화의 증거가 될 수 있음
 - － 재무활동(즉,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조달되는 통화
 - － 영업활동에서 유입되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통화

□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 결정시 추가 고려사항⁵⁾

- 해외사업장의 활동이 보고기업 활동의 일부로서 수행되는지 아니면 상당히 독자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 － 해외사업장이 보고기업에서 수입한 재화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보고기업으로 송금하는 역할만 한다면 해외사업장이 보고기업의 일부로서 활동하는 예에 해당함
 - － 해외사업장이 대부분 현지통화로 현금 등의 화폐성 항목을 축적하고 비용과 수익을 발생시키며 차입을 일으킨다면 해외사업장의 활동이 상당히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예에 해당함
- 보고기업과의 거래가 해외사업장의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낮은지 여부
- 해외사업장 활동에서의 현금흐름이 보고기업의 현금흐름에 직접 영향을 주고 보고기업으로 쉽게 송금될 수 있는지 여부
- 보고기업의 자금지원 없이 해외사업장 활동에서의 현금흐름만으로 현재의 채무나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채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 기타사항

- 기능통화가 불분명한 경우
 - － 경영진이 판단하여 실제거래, 사건과 상황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는 통화를 기능통화로 결정함⁶⁾

5) K-IFRS 제1021호 문단11

6) K-IFRS 제1021호 문단12

○ 기능통화의 변경

- 일단 기능통화를 결정하면 변경하지 않으나 실제거래, 사건과 상황에 변화가 있다면 변경할 수 있음⁷⁾

2) 국내사업장의 외화환산 회계

□ 재무제표 작성시 기업은 (1) 기능통화를 결정하여 (2) 외화항목을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그 환산효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3) 표시통화가 기능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해야 함

□ 보고기업이 다수의 개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⁸⁾

- 보고기업에 속해 있는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보고기업이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통화로 환산되어야 함
- 보고기업은 표시통화로 어떤 통화든지 사용할 수 있음

가)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

① 외화거래의 최초 인식

□ 외화거래의 정의⁹⁾

- 외화거래는 외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외화로 결제되어야 하는 거래로서 다음을 포함함
 - 외화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재화나 용역의 매매
 - 지급하거나 수취할 금액이 외화로 표시된 자금의 차입이나 대여
 - 외화로 표시된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외화로 표시된 부채의 발생이나 상환

7) K-IFRS 제1021호 문단13

8) 연결실체의 경우 지배기업과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관계기업, 조인트벤처나 지점이 있을 수 있음

9) K-IFRS 제1021호 문단20

□ 외화거래의 최초 인식 방법

-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spot exchange rate)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함¹⁰⁾
 - － 실무적으로는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을 자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외화거래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음¹¹⁾
 - 단,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② 보고기간 말의 외화환산

□ 보고기간 말 현재 회수 또는 결제되지 않은 외화자산·부채는 기능통화로 환산되어야 함

- 매 보고기간 말의 외화환산방법은 다음과 같음¹²⁾
 - －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함
 - －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함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함
- 외환차이의 인식방법은 다음과 같음¹³⁾¹⁴⁾
 - － 화폐성 항목¹⁵⁾의 경우
 - 화폐성 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

10) K-IFRS 제1021호 문단21

11) K-IFRS 제1021호 문단22

12) K-IFRS 제1021호 문단23

13) K-IFRS 제1021호 문단28 및 문단30

14) 참고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는 K-IFRS 제1039호를 적용함. 예를 들어, 현금흐름 위험회피수단의 요건을 갖춘 화폐성 항목에 대한 외환차이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보고함

15) 화폐성 항목이라 함은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를 의미함(사례 :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그 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총당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

기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외화환산손익)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함

－ 비화폐성 항목¹⁶⁾의 경우

- 비화폐성 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
- 비화폐성 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표 II - 1〉 보고기간 말의 외화환산방법

구 분		적용환율	외환차이의 인식
화폐성 외화항목		마감환율	당기 손익으로 인식함
비화폐성 외화항목	역사적 원가로 측정	거래일의 환율	외환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공정가치로 측정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	공정가치평가손익을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외환차이도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

□ 둘 이상의 금액을 비교하여 장부금액이 결정되는 항목의 경우¹⁷⁾

- 해당 항목의 사례 :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의 경우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함
- 비화폐성 항목이고 외화로 측정되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를 비교하여 장부금액을 결정함
 - － 그 금액이 결정된 날의 환율(역사적 원가로 측정한 항목의 경우 거래일의 환율)로 적절하게 환산한 취득원가나 장부금액
 - － 그 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예 :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적절하게 환산한 순

16) 비화폐성 항목은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사례 :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 영업권, 무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비화폐성 자산의 인도에 의해 상환되는 충당부채 등)

17) K-IFRS 제1021호 문단25

실현가능가치나 회수가능액

③ 결제시점의 외환차이

□ 화폐성 항목의 결제시점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외환차손익)는 발생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함¹⁸⁾

- 최초 인식시점과 결제시점이 동일한 회계기간에 발생한 경우
 - － 외환차이는 결제일의 환율과 최초 인식시점의 환율 차이에 대해 발생함
- 최초 인식시점과 결제시점이 다른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 － 외환차이는 결제일의 환율과 직전 보고기간말의 환율 차이에 대해 발생함

④ 기능통화의 변경

□ 기능통화가 결정되면 실제거래, 사건과 상황에 변화가 일어난 경우에만 기능통화를 변경할 수 있음¹⁹⁾

- 기능통화의 변경에 따른 효과는 전진적용하여 회계처리 함²⁰⁾
 - － 기능통화가 변경된 날의 환율을 사용하여 모든 항목을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함
 - － 비화폐성 항목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한 금액이 역사적 원가가 됨²¹⁾

나) 표시통화로의 환산

□ 재무제표는 어떠한 통화로도 보고할 수 있으며,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해야 함²²⁾

18) K-IFRS 제1021호 문단28

19) K-IFRS 제1021호 문단36

20) K-IFRS 제1021호 문단35

21) K-IFRS 제1021호 문단37

22) K-IFRS 제1021호 문단38

□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²³⁾

-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함
-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함
 - － 실무적으로 수익과 비용항목을 환산할 때 거래일의 환율에 근접한 환율(예: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자주 사용함
 - 단,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한 경우에는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함²⁴⁾
-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외환차이(exchange differences)²⁵⁾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
 - － 동 외환차이는 재무제표 항목간의 적용환율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것일 뿐 실제 그 금액만큼 현재와 미래의 영업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당 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함

□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 경우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²⁶⁾

- 모든 금액(자산, 부채, 자본항목, 수익과 비용, 비교표시 되는 금액 포함)을 최근 재무상태표 일자의 마감환율로 환산함
- 단, 보고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비교표시되는 금액은 전기에 보고한 재무제표의 금액(전기 이후의 물가수준 변동효과나 환율 변동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함

23) K-IFRS 제1021호 문단39

24) K-IFRS 제1021호 문단40

25) 동 외환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1)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자산과 부채는 마감환율로 환산, (2)순자산의 기초 잔액을 전기의 마감환율과 다른 환율로 환산하기 때문임

26) K-IFRS 제1021호 문단45

3)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 회계

가) 해외사업장 순투자의 외화환산

- 해외사업장이라 함은 보고기업과 다른 국가에서 또는 다른 통화로 영업활동을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나 지점을 말하며,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에 대한 보고기업의 지분을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라고 함
 -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는 일반적으로 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투자주식 등의 항목으로 표시됨
 - － 투자주식 등은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보고기간 말에 외환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 또한 기업회계에서는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 항목 중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²⁷⁾ 역시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보고 있음²⁸⁾
 - 동 화폐성 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의 경우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해외사업장의 개별재무제표에서는 당기손익으로 적절하게 인식함
 - － 단,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예: 해외사업장이 종속기업인 경우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동 외환차이를 처음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함²⁹⁾

나)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환산

-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내사업장에서 기능통화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과 같음³⁰⁾

27) 이와 같은 항목에는 장기채권이나 대여금은 포함될 수 있으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포함되지 않음

28) K-IFRS 제1021호 문단15

29) K-IFRS 제1021호 문단32

30) K-IFRS 제1021호 문단44

□ 추가적으로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연결하는 경우 관련 외화환산방법은 다음과 같음³¹⁾

- 내부거래에서 생긴 환율 변동효과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 내부거래에서 생긴 화폐성 자산(또는 화폐성 부채)을 장단기 여부에 관계없이 대응하는 화폐성 부채(또는 화폐성 자산)와 상계하더라도 특정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과정이 따르기 때문에 관련 환율 변동효과가 연결재무제표에 나타날 수 있음

□ 해외사업장과 보고기업의 보고기간 말이 다른 경우 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³²⁾

- 보고기업의 보고기간 말 현재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하기도 함
- 그러나 보고기간 말의 차이가 3개월 이내이고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유의적인 거래나 기타 사건의 영향을 반영한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의 보고기간 말 현재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음
 - － 이 때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해외사업장의 보고기간 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함
 - － 단, 보고기업의 보고기간 말까지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한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반영함

다)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³³⁾

-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 일부 처분하는 경우³⁴⁾

31) K-IFRS 제1021호 문단45

32) K-IFRS 제1021호 문단46

33) K-IFRS 제1021호 문단48

34) K-IFRS 제1021호 문단48C

-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킴
-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함

2. 법인세법

가. 기능통화제도의 도입 여부

- ☐ 현행 법인세법에는 기능통화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음
 - 법인세법에서는 재무제표가 원화로 작성되었다는 전제하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을 규정하고 있음
 - 단, 재무제표가 외화로 작성되는 국외지점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본통칙을 통해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 법인세법상 외화환산 방법을 국내사업장과 해외사업장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나. 국내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

- ☐ 법인세법에서는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모든 외화자산·부채에 대해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일반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여 외화환산손익을 결산에 반영한 경우 이는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시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함
- ☐ 단, 금융기관³⁵⁾이 보유하는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선도와 통화스왑³⁶⁾에 대해서는 그

평가를 인정하고 있음³⁷⁾

○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함³⁸⁾

－ 이 때 평가대상이 되는 “외화자산·부채”라 함은 기업회계상의 화폐성·비화폐성에 대한 구분 없이 외화로 표시된 모든 외화자산·부채를 의미함

•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규정은 강제규정이므로 당해 금융기관이 결산상 평가손익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세무상 평가액의 차이를 세무조정하여야 함

○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³⁹⁾

－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다.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

□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 중

35)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가 인정되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음(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삭제, 2009. 2. 4.)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정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정한다)

36) 통화선도라 함은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도 하기로 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통화스왑이라 함은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를 의미함(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 2)

37)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제4호

38)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39)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하나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함⁴⁰⁾

○ 방법1

- 당좌자산 등 화폐성 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고 기타 자산·부채 및 손익항목은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역사적 환율(historical exchange rate)로 환산함
-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환산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상산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방법2

- 대차대조표 항목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고,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함
 - 이 때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외국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합계액을 당해 연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함
- 환산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외사업환산차(또는 대)로 국외지점별로 자본항목으로 처리함
 - 이는 이후 사업연도의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처리하고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시점에 손익으로 처리함

○ 방법3

-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항목에 따라서 현행 환율이나 역사적 환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모든 항목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
- 환산차손익에 대한 처리방법은 방법2와 동일함

40)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제1항

〈표 II -2〉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방법

구 분		적용환율	외환차이의 인식
방법1	대차대조표 항목	다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화폐성 자산·부채 : 사업연도 종료일 • 기타항목 : 취득일 또는 발생일	당기손익으로 인식
	손익계산서 항목	다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현금수수거래 : 거래 발생일 • 화폐성 자산·부채와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 : 대체거래 발생일 • 기타항목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 : 당초 취득일 또는 발생일	
방법2	대차대조표 항목	사업연도 종료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해외사업환산차(대)로 자본항목으로 처리
	손익계산서 항목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방법3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을 사업연도 종료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방법의 변경

- 법인은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시 위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 단, 한번 적용한 환산방법은 계속해서 적용해야 함
- 만약 법인이 임의로 통칙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환산방법을 적용하거나 법인이 임의로 환산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방법3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원화환산기준금액으로 함
 - － 단, 당해 국외지점 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방법3에 의하여 환산한 당기순이익보다 큰 경우 결산재무제표상 환산금액을 인정함

Ⅲ. 주요국의 기능통화제도

1. 미 국

가. 개 관

□ 미국에서는 연방소득세법에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연방소득세법상 기능통화는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 Qualified Business Unit)의 경우 달러 이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할 수 있음
 - －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라 함은 별도로 장부를 기장하는 구분이 가능하고 명확히 식별이 가능한 거래단위 또는 사업단위(unit of a trade of business)를 의미함
 - － 기능통화라 함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환경의 통화를 의미함
-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가 기능통화로 달러 이외의 통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환경의 통화로 회계장부를 기록해야 함

□ 납세자는 과세소득을 계산하기까지 연방소득세법상 소득세 관련 모든 결정(all income tax determinations)을 기능통화로 하여야 함⁴¹⁾

- 소득 중 일부를 비기능통화로 수취하거나 비용 중 일부를 비기능통화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기능통화는 기능통화로 환산되어야 함
- 그리고 회계상 기능통화로 계산된 순손익에서 출발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기까지 관련 세무조정 역시 납세자의 기능통화로 하여야 함

41) IRC §985(a)

□ 그러나 소득세 관련 모든 결정을 기능통화로 하더라도 미국에서 세무신고시 보고하는 화폐 기준은 미국 달러임

○ 미국의 경우 세무상 기능통화제도하에서 기능통화를 보고통화인 미국 달러로 환산함에 있어 과세소득 환산방식을 택하고 있음

– 기능통화가 미국 달러가 아닌 경우 기능통화로 계산된 과세소득은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의 해당 과세기간 동안 평균환율을 이용하여 미국 달러로 환산되어야 함

나. 기능통화의 개념

1) 기능통화의 정의

□ 회계상 기능통화(functional currency)라 함은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를 의미함⁴²⁾

○ 일반적으로 이는 기업이 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소비하는 환경의 통화에 해당함

□ 연방소득세법상 기능통화의 정의⁴³⁾

○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dollar)를 의미함

○ 단,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 Qualified Business Unit)의 경우 주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환경의 통화로 회계장부를 기록한 경우 이를 기능통화로 사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의 납세자가 영국에 관련 사업활동을 모두 파운드로 수행하는 지점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점은 파운드를 기능통화로 사용할 수 있음

□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의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라 함은 별도로 장부를 기장하는 구분 가능하고 명확히

42)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52, 문단5

43) IRC §985(a)

식별이 가능한 거래 또는 사업단위를 의미함⁴⁴⁾

- 납세자가 수 개의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를 갖는 것도 가능함
- 해외자회사는 모두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에 해당하며, 해외지점의 경우 독립된 소득획득 활동을 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가 될 수 있음

□ 단,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능통화로 미국 달러를 사용해야 함⁴⁵⁾

- 사업을 달러로 수행하는 경우
- 사업의 주된 장소가 미국에 소재하는 경우
- 기능통화로 달러를 사용하는 것을 선택(election)한 경우
 - (1) 해당 사업단위가 장부를 달러로 기록한 경우, (2) 납세자가 구분거래법에 가까운 회계방법을 이용한 경우 납세자는 달러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사업장부 및 기록이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환경의 통화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
-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통화(hyperinflationary currency)에 해당하는 경우
 - 초인플레이션 통화의 정의
 - 초인플레이션 통화라 함은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 직전 36개월 동안 누적된 인플레이션율이 적어도 100% 이상인 국가의 통화를 의미함
 -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통화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IRC §985(b)(3)에 따라 회계장부를 미국 달러로 기록해야 하며, 구분거래법(예를 들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거래 손익을 달러로 환산함)에 가까운 회계방법을 사용해야 함
 - 이를 미국 달러개산 구분거래법(U.S. dollar approximate separate transactions method, DASTM)이라고도 함
 - DASTM이 요구되는 경우 납세자는 손익계산서를 초인플레이션 통화로 작성한 후 이를 미국의 재무 및 세무 원칙에 따라 보통 월 또는 그보다 짧은 단위로 미국

44) IRC §989(a)

45) www.irs.gov

달러로 환산해야 함⁴⁶⁾

-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계산된 DASTM 손익을 전체 손익에 포함시켜야 함

DASTM 손익 : 과세연도 말 QBU의 순가치 + 본사로의 배당 및 송금 - (직전과
세연도 말 순가치 + 당해연도 QBU의 손익+QBU에 대한 출자금)

* : 순가치는 월단위 또는 그보다 짧은 단위로 미국 달러로 환산함

** : 배당과 송금액은 현물환율(spot rate)을 이용하여 미국 달러로 환산함

□ 기능통화의 변경

-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 납세자가 회계방법(method of accounting)을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⁴⁷⁾

- 회계방법의 변경시 일반규칙⁴⁸⁾

- 회계방법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이 변경 전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소득과 다른 경우 회계방법을 변경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변경으로 인해 소득이 이중계산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adjustments)을 해야 함

- 조정금액이 상당한 경우 과세제한

- 3년간 분배 : (a) 변경 전의 방법을 변경이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전 2년간 과세소득의 계산에 사용하고, (b) 변경이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회계방법의 변경으로 조정해야 할 과세소득 증분이 \$3,000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함

-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통화로 표시된 기초 재무제표를 변경 후 통화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 때 환율은 변경시점의 환율을 적용함

- 따라서 해당 재무제표 항목의 거래시점의 환율과 기능통화가 변경된 시점의 환율이 다른 경우 그 차이만큼 변경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의 손익에 포함하는 조정을 함으로써 관련 외환손익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함

46) Reg. §1.985-3(b)

47) IRC §985(b)(4)

48) IRC §481(a)

□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의 기능통화 결정 사례

-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든 사실과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함

〈사례〉

- 미국에서 제품 X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미국법인 A는 프랑스에 판매사무소를 두고 있음. 직원은 판매직원 한 명이고 그 역할은 단지 프랑스에서 제품 X의 주문을 청구하는 것임
- ☞ 프랑스 사무소는 명확히 식별이 가능한 독립적인 단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가 되지 못하며 따라서 기능통화로 본점의 기능통화와 동일한 달러를 사용해야 함

-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의 기능통화 결정시 기본적으로 일상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통화가 무엇인지 고려해야 함

〈사례〉

- 미국인 납세자 B가 100% 소유 자회사를 스위스에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법인의 수출품을 유럽 전역에 양도하고 있음
- ☞ 회계장부는 유로로 기록되어 있으나 거래가 대부분 미국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미국 달러가 기능통화가 될 것임

- 납세자가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에 해당하는 해외지점이나 해외자회사의 기능통화로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며, 이는 IRC §985(b)(3)에 따라 선택이 가능함

〈사례〉

- 미국법인 C는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에 해당하는 해외지점이 있으며, 해당 국가의 통화는 h임
- 해외지점은 제품 X를 환율이 \$1.00=4h인 시점에 100,000h에 취득했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h의 가치가 1/100만큼 하락하여 환율이 \$1.00=400h가 되었음
- 해외지점이 제품 X를 10,000,000h(취득가액의 100배)에 양도한 경우 실질적인 소득은 없음

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명목이득이 9,900,000h만큼 발생하게 됨

☞ 납세자가 기능통화로 미국 달러를 선택하는 경우 초인플레이션에 따른 이득의 인식을 회피할 수 있음

: 제품 X를 구입시점의 환율(\$1.00=4h)로 계산하면 \$25,000(100,000h/4h)이고, 양도로 실현된 금액은 양도시점의 환율(\$1.00=400h)을 적용하면 \$25,000(10,000,000h/400h)이므로 인식해야 할 이득이 없음

2) 기능통화와 소득세 신고

□ 연방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을 계산하기까지 소득세 관련 모든 결정(all income tax determinations)은 납세자의 기능통화로 함

○ 연방소득세법상 외화환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해당 기업의 기능통화(functional currency)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됨

– 기능통화가 미국 달러인 경우

- 달러 외의 통화로 수취하거나 지불하거나 발생한 모든 소득 및 비용항목 등은 달러로 환산되어야 하며, 달러와 달러 외의 통화 사이에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관련 외화거래손익은 소득세 계산시 과세소득에 반영됨

– 기능통화가 미국 달러가 아닌 경우

- 비기능통화로 수취하거나 지불하거나 발생한 모든 소득 및 비용항목은 기능통화로 환산되어야 하며, 기능통화와 비기능통화 사이에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관련 외화거래손익은 소득세 계산시 과세소득에 반영됨

□ 이와 같이 소득세 관련 모든 결정을 기능통화로 하더라도 미국에서 세무신고시 보고하는 화폐기준은 미국 달러임

○ 미국의 경우 세무상 기능통화제도하에서 기능통화를 보고통화인 미국 달러로 환산함에 있어 과세소득 환산방식을 택하고 있음

– 납세자의 기능통화가 미국 달러가 아닌 경우 과세소득은 납세자의 기능통화로 계산되며, 이를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의 해당 과세기간 동안 평균환율을

이용하여 미국 달러로 환산함

- 이하는 미국 세법상 도입되어 있는 기능통화제도하에서 외화환산방법 및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국내사업장과 해외사업장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음

다. 국내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

1) 세무상 외화거래의 처리 원칙

- 미국에서는 세무상 외화거래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의 세 가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⁴⁹⁾

- 첫째, 외국통화는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그 구입 및 처분은 다른 유형자산을 구입 및 처분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함
 - － 이는 해외지점 또는 해외자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미국 달러로 환산할 때보다는 개별 외국통화를 취득 및 처분하는 독립된 거래에서 적용되는 원칙임
 - 미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자회사의 경우 외화를 구입하여 이를 사무용품과 교환하는 경우 그때마다 손익을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외화를 달러로 환산하는 작업은 보통 매 과세연도 말에 이루어짐
- 둘째, 외화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일반적으로 자본손익보다는 일반손익으로 처리함
 - － 이는 의회에서 환율의 변동을 사실상 이자대용치로 보는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사례1〉과 〈사례2〉에서 선도계약으로 발생한 손익은 각각 화폐교환규칙(currency exchange rule)에 따라 일반손익으로 처리함

49) Doernberg, *International Taxation*, Thomson West Group, 2007, pp. 396~400

〈사례1〉

- 납세자 A가 ₩130,000을 \$1.00=₩130의 환율로 \$1,000에 취득했으며, 이와 동시에 동 엔화를 3개월 동안 연간 표시이자율 2%에 대여해 주었음
 - 동 이자율은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자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가정함. A는 달러와 비교하여 강세인 엔화가 앞으로 그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여 동 계약을 체결한 것임
 - 또한 A는 엔화를 구입한 시점에 동 엔화를 3개월 뒤에 \$1.00=₩128의 환율로 매각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했음
 - 3개월 뒤 A는 외화거래이익으로 \$15.63($130,000/128 - 1,000$)을 실현함
- ☞ 대여금을 회수한 시점에 선도계약을 통해 달러로 수취한 동 이득금액은 실제로 엔화표시 대여금의 낮은 이자율을 보충해주는 이자대용치로서의 역할을 함

〈사례2〉

- 납세자 B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외국통화(따라서 외국통화는 달러와 비교하여 약세임)를 구매하고 이와 동시에 동 외화를 3개월 내에 구입일의 환율보다 더 불리한 특정 환율로 양도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함
 - 납세자가 구입한 외국통화를 대여한 경우 차입계약서상 표시 이자율은 미국에서 통용되는 이자율과 비교하여 높을 것이며, 3개월 뒤 납세자가 외국통화를 선도계약에 따라 양도한 경우 매도가액은 구입가액보다 낮을 것임
- ☞ 납세자는 사실상 대여로 발생한 높은 표시 이자율 중 일부를 돌려주어야 하는 셈임

— 참고로, 외환손익을 일반손익으로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음

- 첫째, 외화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을 기간이익의 성격으로 간주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음
- 둘째, 환율 변동에는 이자율 외에도 화폐거래량, 자본의 흐름, 정치적 분위기, 국가의 신용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침
- 셋째, 외환손익을 일반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다른 유형자산 처분손익에 대한 세무상 처리와 일관성이 없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의 임대가치가 근처 도로의 신설로 증가하게 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임대료로 실현하면 일반소득으로 처리하는 반면, 부동산 양도이익으로 실현하면 자본이득으로 처리하고 있

기 때문임

○ 셋째, 외환손익은 관련 거래손익과 구분하여 처리함

- 예를 들어, 납세자가 이탈리아 리라를 차입하여 이를 이탈리아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경우 관련 부동산 처분손익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구입한 리라의 외환손익과는 별도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외화거래는 일반손익으로 처리하는 반면, 부동산 양도손익은 자본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함
- 단, 납세자가 외화거래를 요건을 갖춘 헤지거래로 미리 지정한 경우 외환손익은 기초자산의 손익과 합산될 수 있음

□ 연방소득세법에서는 상기 기본원칙에 기초하여 외화거래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음

○ 기능통화가 결정되면 비기능통화는 자산으로 간주되며 그 처분은 과세사건(taxable event)에 해당함

- 예를 들어, 미국 달러가 기능통화인 경우 멕시코 페소의 처분은 과세사건에 해당함

○ 외화거래(section 988 transaction)로 발생한 외환손익(foreign currency gain or loss)은 일반소득(또는 손실)으로 처리함⁵⁰⁾

□ 이하에서는 외화거래에 대한 처리방법을 “2)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 및 거래손익”과 “3)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및 거래손익”으로 나누어 각각 관련 구체적인 처리 규정 및 적용사례를 정리하였음

○ 또한 기능통화가 달러 외의 통화인 국내사업장의 과세소득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3) 과세소득의 계산”에서 정리하였음

50) IRC §988(a)

2)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 및 거래손익

가) 관련 규정

① 회계상 처리⁵¹⁾

□ 회계상 외화거래(foreign currency transaction)라 함은 해당 기업의 기능통화 외에 다른 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의미함

○ 외화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 가격이 외화로 표시된 재화 및 용역을 외상으로 매입 또는 매출
- － 외화로 표시된 자금을 대출하거나 차입
- － 선도환계약(forward exchange contract)을 체결
- －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외화부채가 발생하거나 결제

□ 그리고 외화거래손익(transaction gain or loss)은 외화거래에서 사용된 비기능통화와 기능통화간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발생하며,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외화거래의 결제시 실제 기능통화로 실현된 현금흐름의 증감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외환차손익’에 해당함
- 미결제 외화거래에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증감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외화환산손익’에 해당함

□ 외화거래손익의 계산방법

○ 기중

- －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개별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이득 및 손실은 해당 시점의 환율을 이용하여 보고실체의 기능통화로 기록함

○ 기말

- － 매 대차대조표일(balance sheet date)에 보고실체의 기능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

51)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52

로 이루어진 대차대조표상 항목은 현행 환율(current exchange rate)을 반영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함

□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외화거래손익

- 다음의 외화거래손익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소득으로 보고함
 - － 해외사업장(foreign entity)에 대한 순투자 관련 경제적 헤지로 지정되었고 이에 효과적인 외화거래
 - － 장기 투자적 성격⁵²⁾을 가진 기업간 외화거래로서 거래당사자인 실체들이 결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또는 보고실체의 재무보고 목적상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② 세무상 처리

- 미국 연방소득세법에서는 외화거래로 발생한 외환손익에 대해 별도의 처리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일반소득(ordinary income or loss)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외화거래(section 988 transaction)의 정의⁵³⁾

- 연방 소득세법상 외화거래(section 988 transaction)라 함은 납세자가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할 권리가 있거나 또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 비기능통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또는 비기능통화의 가치로 결정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를 의미함
 - － 부채계약(debt instrument)의 취득 또는 부채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된 경우
 - － 추후 납부하거나 수취할 비용 또는 소득의 발생
 - － 선도계약(forward contract), 선물계약(futures contract), 옵션(option) 또는 이와

52) 거래의 종료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계획되거나 기대되지 않음

53) IRC §988(c)(1)(A)(B)

유사한 계약(similar financial instrument)을 체결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 비기능통화(nonfunctional currency)의 처분에 대한 특별규칙⁵⁴⁾

○ 비기능통화의 정의

- 동전, 지폐,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비기능통화로 표시된 청구권, 정기
예금 및 이와 유사한 증서를 말함

○ 비기능통화를 처분하는 경우 이는 외화거래(section 988 transaction)로 간주함

- 따라서 관련 거래손익은 외환손익(foreign currency gain or loss)으로 처리해
야 함

□ 외환손익(foreign currency gain or loss)의 정의⁵⁵⁾

○ 외환이익(foreign currency gain)이란 외화거래로 발생한 이득을 의미함

- 이는 장부기장일(booking date) 이후 그리고 지급일(payment date) 이전에 환율
의 변동으로 실현된 이득금액을 한도로 인식함

○ 외환손실(foreign currency loss)이란 외화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의미함

- 이는 장부기장일 이후 그리고 지급일 이전에 환율의 변동으로 실현된 손실금액
을 한도로 인식함

□ 미국에서 회계상 외화거래손익이 우리나라의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을 모두 포
괄하는 개념이었다면, 세법상 외환손익은 우리나라의 외환차손익만을 포함하는 개
념임

- 즉, 세법에서는 평가손익인 외화환산손익에 대해 아직 미실현된 손익이므로 인정
하지 않고 있으며, 실현된 손익인 외환차손익에 한해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54) IRC §988(c)(1)(C)

55) IRC §988(b)

〈사례〉

Lyatt는 발생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내국법인으로 미국 달러를 기능통화로 사용하고 있음

- 1월 2일 Lyatt는 1,500LC를 \$2,250(1LC=\$1.50)에 취득함
 - 1월 5일(현행 환율 1LC = \$1.49) Lyatt는 1,500LC를 해외금융기관에 저축함
 - 2월 1일(현행 환율 1LC = \$1.45) Lyatt는 1,500LC를 인출하였음
 - 이를 2월 3일(현행환율 1LC = \$1.42) 재고자산 취득에 사용함
- ☞ 1,500LC를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기 위해 처분한 2월 3일까지 실현된 외환손익은 없음. 따라서 Lyatt는 2월 3일 이전에 관련 외환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2월 3일에야 비로소 외환손실로 $\$120(1,500LC \times (\$1.50 - \$1.42))$ 을 인식함.

□ 외환손익 처리방법

○ 일반원칙

- 외화거래(section 988 transaction)로 발생한 외환손익은 별도로 계산하여 일반손익(ordinary gain or loss)으로 과세함⁵⁶⁾
- 단, 다음의 외환손익은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으로 간주함⁵⁷⁾
 - 비과세채권(tax-exempt bonds)에서 발생한 외환손실
 - 연방이자율(applicable federal rate) 미만 차입금과 관련한 해지
 - 현금의 시간가치가 반영된 차입금의 해지
 - 외국통화스왑의 선불
 - 외국통화 해지
 - 미국 국세청의 지침

○ 예외 규정⁵⁸⁾

- 자본자산(capital asset)에 해당하고 스트레들⁵⁹⁾의 일부가 아닌 선도계약(forward

56) IRC §988(a)(1)(A)

57) Treasury Reg. 제1.988-3조(c)

58) IRC §988(a)(1)(B)

59) 옵션 콤비네이션의 하나로 동일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행사가격과 동일한 만료일을 가진 풋과 콜을 동시에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전략임. 스트레들 매입의 경우 시장가격이 「권리행사가격+프리미엄」 범위를 넘어 움직일 때 이익은 무한대가 되며, 손실은 두 개의 프리미엄의 합계에 한정됨. 반면, 스트레들 발행은 스트레들 매입과는 달리 시장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적은 경우 유효한 전략으로, 시장가격이 안정적일 때 프리미엄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나 시장가격이 「권리행사가격+프리미엄」 범위를 벗어날수록 손실은 무한대가 됨.

contract), 선물계약(futures contract), 또는 옵션(option)에서 발생한 외화손익의 경우 일반소득이 아닌 자본손익(capital gain or loss)으로 과세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단,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가 거래체결일의 마감 전에 해당 거래를 식별하고 자본손익으로 과세되는 것을 선택해야 함

□ 개인에 대한 규정⁶⁰⁾

- 외화거래 규정(IRC §988)은 개인이 체결한 외화거래로서 개인거래(personal transaction)에는 적용되지 않음
 - 개인이 거래를 통해 비기능통화를 처분하였고 동 거래가 개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통화를 취득한 시점과 처분한 시점 사이에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이득은 인식하지 않음
 - 단, 외화거래로 발생한 이득이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환이익을 인식함
- 개인거래(personal transaction)의 정의
 - 개인거래라 함은 개인이 체결한 거래로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이 IRC §162에 따라 사업비용(trade or business expense)으로 공제되는 경우 및 IRC §212에 따라 수익대응비용으로 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함

〈사례〉

- 미국인 납세자 A가 유럽으로 휴가를 가면서 환율이 \$1.00=€1일 때 €2,000을 구입함. 이후 환율이 변동하더라도 A가 유로를 사용하는 경우 과세문제(tax consequences)가 발생하지 않음.
- 휴가가 끝나고 A가 환율이 \$1.00 = €0.67인 시점에 €600을 \$900으로 환전했다면 일반적인 과세규칙에 따라 납세자는 \$300의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인식해야 함
- 만약 이득이 \$200 미만이었다면, IRC §988(e)의 소액거래규정(de minimis rule)을 적용하여 납세자가 인식해야 할 이득은 없음
- 만약 환율이 \$1.00 = €1.33인 시점에 환전하여 \$450을 수취했다면 납세자는 \$150의 자본손실(capital loss)을 인식해야 하나 개인의 외화거래로 발생한 손실은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60) IRC §988(e)

나) 적용 사례

① 외화의 취득 또는 처분

□ 외화는 미국 세법상 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취득과 처분은 과세대상에 해당함⁶¹⁾

〈사례〉

- 기능통화가 미국 달러인 납세자 A가 \$1.00=HKD 6의 환율에 HKD 1,200,000을 구입한 경우 장부가액은 \$200,000임
- 환율이 \$1.00 = HKD 5일 때 홍콩제품 X를 HKD 1,200,000에 구입함으로써 동 비기능통화를 처분한 경우 납세자는 \$40,000의 일반소득을 인식하게 됨
- 납세자가 구입한 제품 X에 대한 수정 장부가액(adjusted basis)은 \$240,000(기초 장부가액 \$200,000 + 인식한 이득 \$40,000 또는 HKD 1,200,000을 구입시점 환율(\$1.00=HKD 5)로 계산한 달러가치)임

② 외화의 대여 또는 차입

□ 비기능통화로 표시된 금융부채를 취득(대여)하거나 해당 금융부채의 차입자가 되는 것(차입)은 외화거래(section 988 transaction)에 해당함⁶²⁾

〈사례1〉

- 기능통화가 미국 달러인 납세자 A가 7%의 이자를 지급하는 BRL 1,800,000의 브라질 채권을 \$1.00=BRL1.8의 환율로 취득했다고 가정해보자
: 이 때 관련 손익은 다음의 경우 인식해야 함. 첫째, 납세자가 달러로 BRL을 구입한 시점과 BRL이 채권으로 교환된 시점간에 환율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둘째, 납세자가 채권을 구입한 시점과 동 채권을 처분한 시점간에 환율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 1년 후 채권은 액면가 BRL 1,800,000로 상환되었음. 이 때 환율이 \$1.00=BRL 1.7이었다면, 외화거래에 대한 납세자의 이득은 \$58,824($1,800,000/1.7 - 1,800,000/1.8$)임
- 또한 납세자는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한 경우 동 이자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평균 현물환율을 이용하여 이를 달러로 환산해야 함. 만약 납세자가 현금주의를 채택한 경우라면 동

61) IRC 988(c)(1)(C)

62) §988(c)(1)(B)(i)

이자 = 이자가 지급된 시점의 현물환율을 이용하여 달러로 환산됨

〈사례2〉

- 현금주의 납세자가 £1=\$1일 때 £100을 차입하고 연간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그리고 이를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음.
- 상환 만기 한 달 전 환율이 £1=\$0.70일 때 £110을 구입하고 이를 은행에 저축했음. 한 달 뒤 환율은 £1=\$0.60이 되었고 납세자는 차입금을 상환함
- 위의 일련의 거래 과정 중 외화거래(section 988 transaction)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

(a) 최초 차입 및 상환(IRC §988(c)(1)(B)(i))

: 납세자가 £100을 차입하는 것은 외화거래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를 상환하는 경우 장부기입일(booking date)과 상환일(payment date) 사이의 환율 변동에 대해 \$40 ($£100 \times \$1/£1 - £100 \times \$0.6/£1$)의 이득을 인식해야 함

(b) 차입한 통화를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처분(IRC §988(c)(1)(C)(i))

: 외국통화를 차입한 날짜와 이를 사무용품의 구입에 사용한 날짜 사이에 환율 변동이 없는 경우 차입한 자금의 처분시 외환손익이 발생하지 않음. 그리고 구입한 사무용품의 장부가액은 구입일의 달러 구입가격과 동일함

(c) 공개시장에서 통화의 취득 및 처분(IRC §988(c)(1)(C)(i))

: 납세자가 공개시장에서 £110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통화의 장부가액은 \$77임. 이를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여한 경우 상환 시점에 환율이 £110=\$66이 되었다면, 납세자는 외환손실로 \$11을 인식해야 함.

③ 외화로 표시된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외화로 표시된 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관련 손익 중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부분은 외환손익으로 처리하지 않음

〈사례〉

- 기능통화가 미국 달러인 납세자 A가 도요타 주식 1,000주를 도쿄 주식거래소에서 주당 ₩13,000에 취득했으며, 이 때 환율이 \$1.00=₩130이었다고 가정해보자
- 1년 후 동 주식은 주당 ₩15,000에 양도되었으며, 이 때 환율은 \$1.00=₩125였음
- 따라서 납세자는 주당 \$20($₩15,000/₩125 - ₩13,000/₩130$)의 이득을 인식해야 함
- ☞ 동 이득은 주당 시장이득(market gain) \$16($₩15,000/₩125 - ₩13,000/₩125$)과 주당 통화이득 \$4($₩13,000/₩125 - ₩13,000/₩130$)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외화거래 규정(section

988)은 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당 \$20의 전체 이득에 대해 장기자본이득으로 처리함
 : 이와 유사하게 납세자가 공장 또는 사업설비를 처분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손익은 IRC §1231에 따라 자본이득 또는 일반손실로 처리되며, 재고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은 일반소득(또는 손실)로 처리됨.

④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 제품의 양도시 환율 변동으로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외화거래(section 988 transaction)로 과세하지 않는 반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양도 또는 구입 관련 대금의 납부 및 수취를 이연하여 발생한 통화 관련 손익은 외화거래로 과세함
 - 발생주의 납세자가 재화를 양도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한 대가로 비기능통화로 표시된 매출채권을 수취하는 경우 납세자가 동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손익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일반소득으로 과세됨

〈사례〉

- 기능통화가 미국 달러인 발생주의 납세자 A가 스페인에서 재고자산을 EUR 122,000에 양도하여 매출채권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때 환율은 \$1.00=EUR122임.
- 양도시점에 납세자 A는 재고자산의 양도 자체로 이득이 발생함
- 대가수취 시점에 환율이 \$1.00 = EUR100이면, 납세자는 \$220($\text{EUR } 122,000 / \text{EUR}100 - \text{EUR}122,000 / \text{EUR}122$)을 일반소득으로 보고해야 함

3)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및 거래손익

가) 관련 규정

① 외화 파생상품에 대한 처리

□ 외화 파생상품의 외환손익

○ 일반규칙

- 비기능통화로 표시된 선도계약, 선물계약, 옵션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관련 거래손익은 외환손익으로 간주하며 일반소득으로 과세함

○ 선택규정

- 납세자는 파생상품이 자본자산에 해당하고 스트래들의 일부가 아닌 경우 관련 외환손익을 일반소득이 아닌 자본손익으로 과세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특정 공정가치 평가 대상에 대한 예외규정⁶³⁾

○ 일반규칙

- 과세사업연도 말까지 보유하면 IRC §1256에 따라 공정시장가치로 평가받는 장내 선물계약(regulated futures contract)⁶⁴⁾ 및 비주식옵션(nonequity option)⁶⁵⁾의 경우 이를 취득하는 것은 외화거래(section 988 transaction)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관련 거래손익은 IRC §1256을 적용하여 40/60 규칙에 따라 40%는 단기 자본손익으로 60%는 장기자본손익으로 과세함

○ 선택규정(election out)

- 납세자는 장내 선물계약 및 비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위의 일반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외화거래 규정을 적용하여 전액 일반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자본이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손실보다는 일반손실로 분류되어 납세자의 다른 일반소득과 통산하는 것이 유리함
- 동 선택규정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선택한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다음 과세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음
 - 파트너십 및 S corporation의 경우 개별 파트너별로 각각 선택하는 것도 가능함

63) IRC §988(c)(1)(D)

64) 장내 선물계약은 미국의 국내 선물 및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계약을 말하며,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인정하는 해외의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계약도 포함함

65) 비주식옵션은 거래소에 상장된 옵션으로 기초상품이 주식과 관련되지 않은 옵션을 의미함

② 외화 헤지거래에 대한 처리

□ 외화 헤지거래(988 hedging transactions)의 정의⁶⁶⁾

- 외화 헤지거래란 납세자가 다음을 목적으로 체결한 거래를 의미함
 -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의 환율 변동 위험을 조정하기 위함
 - －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부채계약 또는 납세자가 채무자가 되었거나 될 계약과 관련하여 환율 변동 위험을 조정하기 위함

□ 헤지거래의 요건⁶⁷⁾

- 위험회피 대상은 요건을 갖춘 금융부채일 것
 - － 금융부채는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가 아닌 경우 요건을 갖춘 금융부채로서의 자격을 갖추
- 위험회피가 목적일 것
- 경제적으로 통합된 거래(integrated economic transactions)에 해당할 것
 - － 헤지거래는 위험회피대상인 금융부채의 지급 관련 환율 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해야 함
 - － 헤지거래 당사자들 사이에는 특수 관계가 없어야 함
 - － 납세자는 헤지거래 취득일에 해당거래를 외화 헤지거래(988 hedging transactions)로 식별해야 함

□ 외화 헤지거래에 대한 세무상 처리

-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외환손익은 기초자산거래에서 발생한 손익과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외화거래(section 988 transaction)가 위의 외화 헤지거래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외화 헤지거래를 구성하는 모든 거래를 통합하여 단일의 거래로 처리하는

⁶⁶⁾ IRC §988(d)(2)

⁶⁷⁾ Reg. §1.988-5

것이 가능함

– 이 때 관련 손익은 일반소득으로 과세함⁶⁸⁾

□ 외화 헤지거래를 구성하는 외화거래에 대한 판단

○ 특정 거래가 외화 헤지거래를 구성하는 외화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가 IRC §475 또는 IRC §1256에 따라 공정시장가치로 평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됨

– 단, 자본자산(capital asset)에 해당하고 스트래들의 일부가 아닌 선도계약(forward contract), 선물계약(futures contract), 또는 옵션(option) 거래의 경우 자본손익으로 처리되는 것을 선택했다면 이는 외화 헤지거래를 구성하는 외화거래에 포함되지 않음

○ 그리고 외화거래가 외화 헤지거래를 구성하여 그 처리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IRC §475, §1092 및 §1256에 따른 공정시장가치 평가는 적용되지 않음

나) 적용 사례

① 선도, 선물, 옵션계약 등

□ 외화거래(section 988 transaction)에는 선도, 선물, 옵션계약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계약을 체결 및 취득하는 것이 포함됨

○ 단, 동 거래는 IRC §1256의 규칙에 따라 연간 발생규칙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되어서는 안됨⁶⁹⁾

〈사례〉

- 기능통화가 미국 달러인 발생주의 납세자 A가 TWD 30,000을 6개월 뒤에 $\$1.00 = \text{TWD } 30$ 의 환율로 양도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했음
- 6개월 뒤에 환율이 $\$1.00 = \text{TWD } 40$ 이 되었다면, 납세자는 $\$250(30,000/30 - 30,000/40)$ 의 외환이익(foreign currency gain)을 인식해야 함

⁶⁸⁾ IRC §988(d)(1)

⁶⁹⁾ IRC §988(c)(1)(B)(iii)

② 헤지

- 헤지 거래(section 988 hedging transaction)는 기초자산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납세자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관련 요건이 충족되면 위험회피 대상인 금융부채와 헤지거래를 단일의 통합 금융부채로 처리함

〈사례1〉

- 기능통화가 미국 달러인 발생주의 납세자 A는 시장이자율 30%에 외국통화(F) 1,000단위를 2년 동안 차입했음. 매해 이자지급액은 F300이며, 2년 뒤에는 원금 F1,000을 상환해야 함. 높은 이자율은 달러와 비교하여 외국통화의 가치하락이 예상됨을 반영하는 것임.
- 통화 F에 대한 현물시장의 환율이 $\$1.00=F2$ 인 경우 동 차입금의 달러가치는 \$500임. 통화 F는 선도시장에서 1년 뒤에는 $\$1.00=F2.5$, 2년 뒤에는 $\$1.00=F2.75$ 에 거래되고 있음.
- 납세자는 통화 F가 달러와 비교하여 강세가 되는 예기치 못한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도시장에서 1년 뒤의 F300을 $\$120(F300/F2.5)$ 에 2년 뒤에 F1,300을 $\$473(F1,300/F2.75)$ 에 취득함. 이로써 1년 뒤의 지급이자 F300과 2년 뒤의 지급이자 및 원금상환액 F1,300의 환율 변동 위험을 헤지함
- 이와 같이 완전 위험회피로 외화 차입거래는 \$500만큼 달러를 차입하고 1년 뒤에 \$120, 2년 뒤에 \$473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전환됨
- 이 때 만기이자율은 30%가 아니라 약 10%에 해당함. 구체적으로 납세자는 1년 뒤에 \$120의 이자를 공제하고 2년 뒤에 $\$27(\$500 - F1,000/F2.75 - F300/F2.75)$ 의 이득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IRC §1271의 OID 규칙(OID rule)에 따라 1년 뒤의 지급액 중 $\$50(\$500 \times 10\%)$ 는 이자비용으로 공제하고 남은 \$70은 원금 상환으로 간주함. 그리고 2년 뒤에는 원금 \$430이 상환되는 것으로 보며, $\$43(\text{원금 } \$430 \times 10\%)$ 의 이자를 공제함.
- 헤지규칙의 적용으로 2년의 기간에 걸쳐 전반적인 공제금액(\$93)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단, 동 규칙의 적용으로 1년 뒤에 공제금액이 가속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사례2〉

비슷한 규칙은 재화, 용역 또는 주식을 매입하고 양도하는 위험회피 수행계약(hedged executory contracts)에도 적용됨

- 미국인 납세자가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으로 6개월 뒤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음
- 그리고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즉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외국통화를 고정된 가격으로 구입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했음
-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선도계약 헤지의 구입은 통합되어 고정된 달러가격으로 서비스 원가를 구성하게 됨

4) 과세소득의 계산

-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가 달러 이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연방소득세법상 소득세 관련 모든 결정은 납세자의 기능통화로 하여야 함
 - 회계상 순이익에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기까지는 납세자의 기능통화로 계산한 후 기능통화로 계산된 과세소득을 IRC §989(b)에 따라 결정된 평균환율(average exchange rate)로 환산함

라. 해외 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

1) 개관

- 미국인 납세자가 지점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해외에서 영업을 하고 동 사업이 외화로 수행되는 경우 미국에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의 영업결과를 미국 달러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함
 - 해외지점의 경우 환산된 손익은 미국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됨
 - 해외자회사의 경우 미국 모회사로의 배당 및 간주배당(Subpart F 소득)은 모회사의 과세소득의 결정을 위해 미국 달러로 환산되어야 함
 - － 그리고 외국납부세액 역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의 계산을 위해 달러로 환산되어야 함

2) 관련 규정

가) 회계상 처리

- 미국 재무회계기준에서는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다음의 환율을 이용하여 미국 달러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음
 - 재무제표의 모든 요소는 현행 환율(current exchange rate)을 반영하여 환산되어야 함

- 자산 및 부채의 경우 대차대조표일(balance sheet date)의 환율로 환산함
- 수익, 비용, 이득과 손실의 경우 해당 항목이 인식된 일자의 환율을 이용하여 환산함
 - 단, 일반적으로 수많은 수익, 비용, 이득과 손실이 인식된 일자의 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과세기간 동안 적절히 가중 평균한 환율(weighted average exchange rate)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환산조정(translation adjustments)
 -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달러가 아닌 경우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보고통화(reporting currency)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산조정이 발생하게 됨
 - 환산조정은 당기 손익계산서상 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외사업장의 자본항목에 해당하는 기타포괄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으로 보고함

□ 해외사업장에 누적된 환산조정 누계액의 실현

- 해외사업장의 자본항목에 축적된 환산조정은 해당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관련 투자를 실질적으로 청산하는 시점에 실현됨
 - 즉, 해외사업장의 양도 및 청산시 환산조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손익 또는 청산손익의 일부로 보고하여 과세함

나) 세무상 처리

① 해외지점

- 기능통화가 달러가 아닌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해당 납세자의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⁷⁰⁾
 - 각 사업단위에 대해 각각 그 기능통화로 과세소득(taxable income or loss)을 계산함
 - 구체적인 외화환산 방법은 국내사업장의 경우와 동일함
 - 각 사업단위별로 해당 기능통화로 계산한 과세소득을 적정환율(appropriate exchange rate)로 환산함

70) IRC §987(1), (2)

- 이 때 적정환율이라 함은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의 해당 과세기간 동안 평균환율을 의미함⁷¹⁾

〈사례〉

- Heraton은 내국법인으로서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에 해당하는 해외지점이 있음
- 동 지점은 그 기능통화로 외국통화인 LC를 사용하고 있으며, LC의 연간 평균 가치는 \$0.18임
- 지점의 연간 과세소득은 6,000,000LC임
- ☞ Heraton은 지점의 소득을 US\$ 1,080,000($6,000,000\text{LC} \times \$0.18/\text{LC}$)으로 환산할 수 있음

□ 해외지점의 소득세 정보신고 서식(Form 8858 : 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Foreign Disregarded Entities)상 과세소득 계산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Form 8858의 Schedule H : 과세소득(current earnings and profits)의 계산

- 1행부터 6행까지는 기능통화로 기입하며, 6행의 금액을 IRC §989(b)에 따라 결정된 평균환율로 환산하여 7행에 기입함

Schedule H Current Earnings and Profits or Taxable Income		
1	Current year net income or (loss) per foreign books of account	1
2	Total net additions	2
3	Total net subtractions	3
4	Current earnings and profits (or taxable income) (line 1 plus line 2 minus line 3)	4
5	DASTM gain or loss (if applicable)	5
6	Combine lines 4 and 5	6
7	Current earnings and profits (or taxable income) in U.S. dollars (line 6 translated at the average exchange rate determined under section 989(b) and the related regulations)	7
Enter exchange rate used for line 7		

71) IRC §989(b)

□ 기능통화가 서로 다른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간에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발생시점의 환율과 이전시점의 환율 차이에 대해서도 외환손익을 인식해야 함

○ 동 환율차이는 해당 이전 자산에 대한 미인식 외환손익(unrecognized foreign currency gains/losses)에 해당함

－ 이를 이전시점에서 인식하는 이유는 기능통화가 서로 다른 사업단위간에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된 자산이 재무제표상에 기록되는 기능통화가 변경되므로 해당 자산을 기준에 보유하고 있던 사업단위 단계에서 변경 후의 기능통화로 장부를 기록해왔다면 발생했을 외환손익을 이전시점에 인식하기 위한 것임

－ 그리고 자산을 수취한 사업단위는 수취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전시점의 환율을 이용하여 해당 사업단위의 기능통화로 기록함

○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로부터 1986년 이후 송금은 1986년 이후 축적된 이익잉여금 중 일정 비율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며, 해당 손익은 각각 일반소득으로 과세함

□ 미인식 외환손익(unrecognized foreign currency gains/losses)이 발생하는 항목과 그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인식방법은 다음과 같음

○ 발생항목

－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가 외화, 외화로 표시된 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과세연도 말 환율을 이용하여 달러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율이 변동하면 미인식외환손익이 발생하게 됨

• 반면, 기타 자산 및 부채(예를 들어, 부동산, 공장, 설비 및 재고자산 등)의 경우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가 이를 취득한 일자의 역사적 환율로 평가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미인식외환손익이 발생하지 않음

○ 미인식외환손익의 계산방법

－ 미인식외환손익은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의 기초 대차대조표와 기말 대차대조표를 비교하여 그 증가분에 당기 과세소득과 해당 사업장에 대한 본점의 출자금액을 차감하고 본점으로서의 송금액은 가산하여 계산

－ 당기 발생한 미인식외환손익과 전기 이전에 발생한 미인식외환손익을 합산하여

그 누계액을 계산함

○ 미인식외환손익의 인식방법

- 미인식외환손익은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가 본점으로 송금시 미인식외환손익에 송금비율(“remittance proportion”)을 곱한 금액만큼을 해당 본점의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함
 - 송금비율은 달러표시 송금액을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의 달러표시 기말 순자산가액에 달러표시 송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눈 값임
- 기말 미인식외환손익 누계액에서 본점의 손익으로 인식한 미인식외환손익을 차감하여 다음 해로 이월되는 미인식외환손익누계액을 계산함

- (1) 미인식외환손익 = (기말 순자산가액 - 기초 순자산가액) - 당기 과세소득 - (출자금 - 송금액)
- (2) 송금시 실현되는 미인식외환손익 = 미인식외환손익누계액 × 송금비율
- (3) 송금비율 = 달러표시 송금액 / (달러표시 기말 순자산가액 + 달러표시 송금액)

□ 미인식외환손익의 계산 사례

〈사례1〉

USCO가 다음의 현금과 건물을 투자하여 2009년 7월 1일 일본에 지점을 설립함

- 현금: \$1,000(즉시 ₩100,000으로 환전함)
- 건물: 수정 장부가액(adjusted basis)이 \$500(감가상각은 고려하지 않음)
- 또한 동 일자로 ₩10,000을 차입함
- 그리고 2009.7.1에서 2009.12.31 사이 ₩10,000(연간 평균환율로 환산하면 \$90.90)의 소득을 획득함
- 환율: 2009.7.1 \$1.00=₩100, 2009.12.31 \$1.00=₩120

2009년 말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음

2009	기초₩	기초\$	기말₩	기말\$	비고
현금	0	0	120,000	1,000.00	환율 \$1.00=₩120*
건물	0	0	50,000	500.00	환율 \$1.00=₩100*
부채	0	0	(10,000)	(83.33)	환율 \$1.00=₩120*
순가치 증가	0	0	160,000	1,416.67	
조정:					
출자금액				(1,500.00)	
과세소득				(90.90)	연평균환율로 계산
미인식 순손익				(174.23)**	

(*) 기말 대차대조표에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와 같은 “marked item”은 기말환율로 환산하는 반면, 건물과 같은 역사적 자산(historic assets)은 역사적 환율을 반영함

(**) 기초와 기말의 대차대조표 가액을 비교하여 그 증가분에 해당 과세연도 동안 출자한 항목(현금과 건물)을 차감하고 과세소득의 경우 관련 통화이익은 이미 USCO가 고려하였기 때문에 역시 차감하여 미인식의환손익을 계산함

○ <사례1>에서 2009년에 발생한 미인식의환손실은 \$174.23이며, 이는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역사적 자산(건물 등)에 귀속되는 미인식의환손실은 없으며, 송금이 있기 전까지 USCO는 미인식의환손실을 인식하지 않음

구성	₩	\$(기말 환산 전)	\$(기말 환산 후)	\$(변동액)
현금 출자분	100,000	1,000 \$1.00=₩100	833.33 \$1.00=₩120	(166.67)
현금 수익분	10,000	90.90	83.33 \$1.00=₩120	(7.56)
차입한 현금	10,000	100.00 \$1.00=₩100	83.33 \$1.00=₩120	(16.67)
부채	-10,000	(100.00) \$1.00=₩100	(83.33) \$1.00=₩120	16.67
합계				(174.23)

<사례2>

위의 <사례1>에 추가하여 2010년 다음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 2010.5.31 추가로 ₩10,000을 차입하고 설비를 구입함(감가상각은 고려하지 않음)
- 2010년 ₩25,000(연평균환율로 환산하면 \$190.00)의 소득을 획득함
- 2010.12.31 ₩70,000을 본점으로 송금함
- 환율 : 2010.5.31 \$1.00=₩130, 2010.12.31 \$1.00=₩140

2010년 말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음

2010	기초₩	기초\$	기말₩	기말\$	비고
현금	120,000	1,000.00	75,000	535.71	환율 \$1.00=₩140
건물	50,000	500.00	50,000	500.00	환율 \$1.00=₩100
설비			10,000	76.92	환율 \$1.00=₩130
부채	(10,000)	(83.33)	(20,000)	(142.86)	환율 \$1.00=₩140
순가치	160,000	1,416.67	115,000	969.77	
연간 증감액				(446.90)	
조정:					
송금				500.00	환율 \$1.00=₩140
과세소득				(190.00)	연평균환율로 계산
미인식 순손익		(174.23)		(136.90)(*)	총 (311.13)

(*) 미인식외환손익은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의 기말가치가 \$446.90만큼 감소한 것과 아울러 지점거래(IRC §987) 유입과 유출을 반영하여 계산해야 함. 즉, 미인식손익 계산시 송금액은 환산해야 하며, 과세소득의 경우 이미 USCO가 \$190의 과세소득을 보고하는 시점에 고려되었기 때문에 미인식손익 계산시 차감해야 함.

○ <사례2>에서 2010년에 발생한 미인식외환손실은 \$136.90이며, 이는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성	₩	\$(기말 환산 전)	\$(기말 환산 후)	\$(변동액)
기초 현금액	120,000	1,000 \$1.00=₩120	857.14 \$1.00=₩140	(142.86)
현금 수익분	25,000	190.00	178.57 \$1.00=₩140	(11.43)
기초 부채	-10,000	(83.33) \$1.00=₩120	71.43 \$1.00=₩140	11.90
신규 부채	-10,000	(76.92) \$1.00=₩130	(71.43) \$1.00=₩140	5.49
합계				(136.90)

○ 미인식외환손익의 인식

– 2010년 발생한 ₩70,000의 송금과 관련하여 미인식외환손익 중 일부를 인식해야 하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음

(1) 한 해 동안 지점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에서 지점에 출자한 금액을 차감하여 순송금액을 계산함

- <사례2>의 경우 ₩70,000의 송금이 한 차례 있었음

- ₩70,000의 송금은 기말환율로 평가되는 자산의 송금이기는 하나 만약 역사적 자산(건물 등)을 송금하는 경우에도 지점거래(IRC §987) 손익이 발생함

(2) 미인식외환손실에 송금비율(“remittance proportion”)을 곱한 금액을 당기 USCO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함

- 미인식외환손실 = \$174.23(2009년) + \$136.90(2010년) = \$311.13

- 송금비율 = 달러표시 송금액/(달러표시 기말 순자산가액 + 달러표시 송금액)

$$= \$500/(\$969.77+\$500) = 34.02\%$$

-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금액 = 미인식외환손실 × 송금비율 = $\$311.13 \times 34.02\% = \105.84

(3) 기말 미인식외환손실누계액에서 당기 USCO가 인식한 손실금액을 제외하고 다음 해로 이월함

- 차기 이월 미인식외환손실누계액 = $\$311.13 - \$105.84 = \$205.29$

② 해외자회사

□ 해외자회사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즉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해외자회사가 미국 내 주주에게 배당 또는 간주배당을 하는 시점에 미국 세법상 과세됨

□ 해외자회사가 미국 주주에게 배당하는 시점에 배당금액, 배당이 지급된 수익금액, 주주가 IRC §902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indirect 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동 배당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달러로 환산되어야 함

- 배당금과 배당이 지급된 수익금은 해당 배당금이 미국 내 모회사의 소득으로 포함된 일자의 현행환율(spot rate)을 이용하여 달러로 환산함⁷²⁾

– 해외자회사의 간주배당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가중평균환율을 이용하여 환산함⁷³⁾

- 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해당 세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평균환율(average exchange rate)을 이용하여 달러로 환산함

- 미국 주주의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 이익을 나중에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이 미국 주주의 소득에 포함된 일자와 분배된 일자 사이의 환율차이에 대해서는 일반소득으로 처리하여 과세함⁷⁴⁾

72) IRC §986(a), §989

73) IRC §989(b)(3)

74) IRC §986(c)

- 동 규칙은 해외 개인지주회사의 소득 또는 해외 간접투자법인의 소득을 달러로 환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의 결정

-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발생기준 납세자는 외국납부세액을 이를 납부한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이용하여 환산함⁷⁵⁾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이 납부된 시점의 환율을 이용하여 달러로 환산함
 - － 과세사업연도 종결 후 2년 뒤 납부되는 외국납부세액
 - － 과세사업연도 개시 전 납부된 외국납부세액
 - － 인플레이 통화로 명명된 외국납부세액

〈사례〉

- Tilton은 현금기준 납세자인 내국법인으로 역년 기준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으며, 국외에 여러 개의 지점을 갖고 있음
- 2008 사업연도 동안 Tilton은 첫 3분기에 대해서는 각 분기별로 각각 200,000LC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4분기에는 250,000LC의 세금을 납부함
- LC의 환율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각각 \$0.48, \$0.51, \$0.50, \$0.55였음

☞ 2008 사업연도에 대해 Tilton이 공제 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3월 31일	\$96,000 (200,000LC×\$0.48/LC)
6월 30일	\$102,000 (200,000LC×\$0.51/LC)
9월 30일	\$100,000 (200,000LC×\$0.50/LC)
12월 31일	\$137,500 (250,000LC×\$0.55/LC)
총 외국납부세액	\$435,000

75) IRC §986(a)(1)

2. 호 주

가. 개 관

- 2003년 7월 1일 이후 외화환산에 관한 일반규정이 ITAA 1997에 도입됨. 이를 외화환산 규정(forex rule)이라고 함. 다만, 금융기관의 과세소득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 ITAA 1997 Subdivision 775-B : Realisation of forex gains or losses
 - － 외화거래로 인한 손익의 인식여부, 인식시기, 인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
 - ITAA 1997 Subdivision 960-C : Foreign currency(translation rule)
 - － 외화로 표시된 금액(amount)을 호주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
 - ITAA 1997 Subdivision 960-D : Functional currency(functional currency rule)
 - － 외화환산의 예외로, 기능통화의 적용에 관한 규정

나. 기능통화의 개념

1) 개념

- 외화환산에 관한 기능통화 특례가 적용되는 기능통화를 적정기능통화(applicable functional currency)라고 함
 - 적정기능통화 : 기능통화를 사용할 것을 선택한 시점에 장부를 기록하기 위한 유일한 통화, 또는 지배적인 통화임⁷⁶⁾
 - 적정기능통화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적정기능통화의 적용을 선택하여야 함
 - 적정기능통화의 적용을 선택한 후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적정기능통화가 선택되어 적용될 경우, 비기능통화(non-functional currency)는 일반외화환산 규정에 따라 기능통화로 환산되어야 함

76) sec. 960.70(1) ITAA 1997

2) 기능통화와 세무신고

☐ BAS (Business Activity Statement)⁷⁷⁾

- 기능통화를 호주통화로 환산한 후 신고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환산함
 - 적정기능통화로 분기소득(installment income)을 환산
 - 적절한 환율(appropriate rate)에 의하여 호주통화로 환산
 - 이를 BAS에 기입하여 신고함.

☐ 법인세 신고(Corporate Tax Return)

- 납부세액 계산 시, 기능통화를 호주통화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함
- 모든 법인세 신고서(company tax return)상 금액은 호주통화로 표시되어야 함
 - 다만, 일부항목(label)상 금액을 기능통화로 표시하는 경우, 그 총액은 과세소득의 환산에 사용했던 동일한 기능통화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하여야 함
 - 호주달러로만 표시해야 하는 항목 : label 7J Francking Credit, label 7C Australian franking credits from a New Zealand Company.
- 신고서 완성 전까지 호주달러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항목 : label 7R Tax loss deducted, label 7S Tax loss transferred in,
 - 세무상 결손금은 과세소득에서 공제가 가능 함. 결손금을 이월시키는 경우, 기능통화로 관리함
 - label 7R은 기능통화환율로 환산함

다. 국내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

1) 개관

☐ 외화자산·부채 및 파생상품에 관한 거래손익의 인식에 관한 규정은 ITAA 1997

77) 부가가치세(GST)와 소득세원천징수(PAYG)에 관한 사항을 분기마다 보고하는 신고서

Subdivision 775-B에서 규정됨

- ITAA 1997 Subdivision 775-B 규정은 외환거래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부담하게 될 권리나 의무에 관한 손익에 적용됨
- ITAA 1997 Subdivision 775-B 규정의 목적 : 외환실현이익(forex realisation gains)을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외환실현손실(forex realisation loss)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기 위함

□ 외화표시 금액의 환산관련 사항은 ITAA 1997 Subdivision 960-C에서 규정됨

-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금액의 환산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음

2) 외화자산·부채,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및 거래손익 인식방법

□ 외화관련 거래로 인한 손익이 실현될(realised) 경우, 과세소득(assessable income)에 포함됨. 반면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 손익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실현되지 않는 외화자산·부채 및 외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에 관한 손익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ITAA 1997 Subdivision 775-B에 따르면, 외화관련 거래의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외환실현사건(forex realisation event)를 제시하고 있음⁷⁸⁾

- 외화실현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외화실현이익은 과세소득에 포함하며, 외환실현손실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함

□ 외화실현사건 1 : 외화나 외화를 받을 권리를 다른 실체에 처분하는 경우

- 외화를 다른 실체에 처분하는 경우, 납세자는 외환실현손익을 인식함
- 외환실현이익 : 외화, 외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처분금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외환실현손실 : 외화, 외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처분금액이 취득가액에 미달

78) sec. 775.15 ITAA 1997

하는 금액

□ 외화실현사건 2 : 외화를 받을 권리가 중단되는 경우

- 외화를 수취할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지를 중단하는 경우에 외화실현사건2가 발생함
- 권리란 ① 통상소득이나 법정소득을 수취할 권리나 소득을 취득할 권리, ② 감가상각자산의 보유를 중단하는 대가로 받는 권리, ③ 외화나 호주달러를 지급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생성하는 권리, 또는 ④ CGT자산에 관련하여 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 사건의 대가로 생성되는 권리를 의미함
 - － 통상소득 : 통상적인 개념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⁷⁹⁾
 - － 법정소득 : 과세되는 소득에 포함되나 통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⁸⁰⁾
- 권리에는 특정한 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권리를 포함함.
- 일반적으로, 외화를 수취하는 권리가 실제 외화의 수취에 의해서 충족될 때임

□ 외화실현사건 3 : 외화를 수취해야 할 의무가 중단되는 경우

- 외화나 호주달러를 지급하는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취득하는 대가로 의무 (obligation)를 부담한 경우, 납세자가 외화를 수취할 의무의 보유를 중단할 때, 외화실현사건 3이 발생함.
- 일반적으로, 외화를 수취할 의무가 외화의 실제 수취에 의해서 충족될 때임
- 의무에는 특정한 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의무를 포함함
- 외화실현이익 : 받은 외화의 가치가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만큼 발생함.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의무부담의 순원가’라고 함.
 - － 납세자가 발행한 옵션이 궁극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 이득(gain)은 옵션을 발행한 대가로 납세자가 수취하는 금액임
 - － 의무부담의 순원가 : 납세자가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공해야 하는 대가－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 수취하는 대가(이전에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한함)

79) sec. 6.5(1) ITAA 1997

80) sec. 6.5(2) ITAA 1997

- 외화실현손실 : 받은 외화의 가치－의무를 부담하기 위해 수취한 대가(이전에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한함)

□ 외화실현사건 4 : 외화를 지급할 의무가 중단되는 경우

- 의무에는 특정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의무도 포함
- 의무는 중단되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 공제가능 비용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 － 과세소득이나 필요경비의 계산에 구성요소인 의무
 - － CGT 자산 취득원가의 구성요소를 형성하거나 발생시키는 의무
 - － 자본충당금 규정에 의해서, 감가상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 의무
 - － 호주달러나 외화를 수취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의무
-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외화를 실제로 지급할 때 외화실현사건 4가 발생함.
- 외화실현이익 : 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의무의 부담으로 수취한 대가보다 낮은 경우에 외화실현이익이 발생함.
- ‘의무의 부담으로 수취한 대가’란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인해 납세자가 수취할 권리를 얻는 대가(과세소득에 포함된 것은 제외)

□ 외화실현사건 5 : 외화를 지급할 권리를 중단하는 경우.

- 권리가 외화나 호주달러에 관한 특정 형태의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수취되거나 생성되는 경우와 외화를 지급할 권리가 중단되는 경우에 외화실현사건 5가 발생함
- 권리에는 특정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권리도 포함
- 외화실현이익 : 권리에 따라 지급한 외화의 가치－권리의 청산으로 수취할 수 있는 금액의 가치
- ‘권리의 청산으로 수취할 수 있는 금액의 가치’는 Forex entitlement base라고 함
- Forex entitlement base : 납세자가 권리의 청산으로 수취할 수 있는 대가－공제가능 경비를 이전에 발생시키지 않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공한 대가

□ 외화실현사건의 특례 : 외화실현손익이 자본자산(capital asset)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적용됨.

- 자본자산에 관련 있는 외화실현손익은 외화권리 · 의무와 관련 있는 자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자본손익의 성격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
- 따라서, 외화실현이익이 자본자산과 관련 있는 외화실현사건(FRE)에서 발생하였으며, 자본자산 거래의 계약시점과 지급시점 간의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외화실현이익은, CGT의 계산에 있어 자본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함

□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회피

- 위험회피를 위하여 체결되는 모든 기초거래(underlying transaction)는 모두 별도로 취급되어, Division 775에 의한 외화실현사건에 의해서 외화실현손익의 인식여부가 결정됨⁸¹⁾

3)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관련 세무상 처리방법

□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금액의 환산은 외화표시 금액의 환산에 관한 일반규정인 ITAA 1997 Subdivision 960-C에서 규정됨

- ITAA 1997 Subdivision 960-C에 의한 일반외화환산 규정은 외화금액(amount in a foreign currency)에 적용됨
- 외화금액(amount)은 다음과 같음⁸²⁾
 - － 통상소득(ordinary income)
 - － 비용(an expense)
 - － 채무(an obligation)
 - － 부채(a liability)
 - － 수입금액(a receipt)
 - － 지급금액(a payment)
 - － 대가(consideration)

81) ATO fact sheet, <http://www.ato.gov.au/businesses/>

82) sec 960,50 ITAA 1997

- 가치평가(a value)
- 조세관련금액은 손익계정, 자본계정 등으로 표시될 수 있음
- 다른 외화금액의 일부를 형성하는 외화금액의 환산순서⁸³⁾
 - 먼저, 그 일부의 외화금액을 환산함
 - 다음으로, 다른 외화금액을 환산함

□ 외화관련 항목의 환산방법

- 외화실현사건 4가 발생한 경우 : 조세인식시점에 그 의무 금액은 환산되어야 함
- 감가상각자산의 원가 :
 - 자산유지의 대가로 의무를 부담하고 자산을 보유하기 전에 의무가 이행되었다면, 자산의 원가는 자산의 보유가 시작된 시점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되어야 함
 - 자산의 보유를 위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자산을 보유하기 시작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다면, 자산의 원가는 의무가 이행되는 시점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되어야 함
- 원가법을 선택한 경우,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보유중인 재고자산의 가치 : 재고 item 을 보유한 시점에 적용가능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
- 시장판매가격법이나 대체가격법 선택한 경우,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보유중인 재고 자산의 가치 : 과세연도 말에 적용가능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
- 현금가액이나 다른 자산의 시가와 관련하여, part 3-1이나 3-3의 목적과 관련 있는 경우, 그 현금가액과 다른 자산의 시가 : part 3-1이나 3-3의 목적을 위하여 거래시점에 적용할 환율로 환산하여야 함
- 통상소득 (ordinary income) :
 - 통상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이나 그 이전에 그 금액이 수취되는 경우 : 수취시점의 환율로 환산
 - 그 밖의 경우 : 그 금액의 발생시점에 환산
- 법정소득(statutory income, 자본이득 제외) :
 - 법정소득이 과세소득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시점, 또는 그

83) sec. 960.50(4) ITAA 1997

- 전에 수취되는 경우 : 수취하는 시점에 환산되어야 함
- 그 밖의 경우 : 요건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시점의 환율로 환산
- 필요경비 (자본충당금 관련 비용 제외)
- 필요경비가 공제가능한 시점이나 그 이전에 지급되는 경우 : 지급시점에 환산
 - 그 밖의 경우 : 공제가능한 시점에 적용가능한 환율로 환산
- 유보(withhold)되는 금액 : 유보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환율
- 기타 수취하거나 지급한 금액 : 수취하거나 지급한 시점에 적용되는 환율로 환산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amount) :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환율로 환산⁸⁴⁾

〈표 III - 1〉 조세관련금액의 환산방법

조세관련금액	실제환율로 환산하는 시점
통상소득	소득 발생(derive) 시점과 수취(receipt) 시점 중 빠른 시점
자본손익을 제외한 법정소득 ⁸⁵⁾	과세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된 시점과 수취시점 중 빠른 시점
필요경비(감가상각자산과 관련된 필요경비 제외)	공제가능 경비의 발생시점과 지급시점 중 빠른 시점
감가상각자산 관련 지급비용	지급시점과 감가상각자산의 보유시작 시점 중 빠른 시점
자본자산 관련 금액	관련 거래와 사건의 발생 시점
원가법으로 기말에 평가한 보유 중 재고자산 평가액	보유 중 재고자산이 된 시점에 지배적인(prevaling) 환율로 평가
시가법으로 기말에 평가한 보유 중 재고자산 평가액	당해 사업연도 말에 적용되는 환율
유보(withhold)되는 금액	유보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환율

자료: 호주 국세청, <http://www.ato.gov.au/businesses/>

84) ITAA 1997 reg. 960.50.01

85) 통상소득(ordinary income)이 아닌 과세소득을 법정소득(statutory income)이라고 함.

□ 적정기능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호주통화로 환산할 경우의 특례

- 환산대상 금액의 계산에 구성요소로 들어가는 금액도 환산하여야 하는 경우 : 그 구성요소를 먼저 환산한 후, 환산대상 금액을 환산함⁸⁶⁾
 - － 다만, 환산대상 금액에는 특별발생금액(special accrual amounts)을 제외함
- 특별발생항목의 경우, 기능통화로 환산하지 않고 바로 호주달러로 환산함⁸⁷⁾ 특별발생항목은 과세소득에 증가와 감소를 일으키는 항목으로 다음과 같음
 - － 고급차의 리스계약에 의해 발생한 항목⁸⁸⁾
 - － 금융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항목으로, ① 금융계약의 손익에 관련된 발생액과 ② 금융계약에 의해서 특정한 외화로 수취된 금융상 효익⁸⁹⁾
 - － 매매형식을 통한 금융조달에 관련된 항목⁹⁰⁾
 - － 조세혜택이 있는 리스관련 항목⁹¹⁾
 - － 자산의 사용에 관한 특정계약에 관련된 항목⁹²⁾
 - － 발생소득이 이연되는 유가증권에 관련된 항목⁹³⁾

□ 환산 시 적용하는 환율

- 원칙 : 조세관련 금액은 환산되는 시점의 실제환율(actual rate)로 환산되어야 함
- 다만, regulation에 따르면, 평균환율을 적용할 수 있음
 - － 납세자는 평균환율을 사용하여 호주통화로 환산할 수 있음
 - － 평균환율 계산 기간 : 12개월 이내로 선택할 수 있음
 - － 다만, 합리적 개산(reasonable approximation)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균환율의 사용이 불가능함

86) sec 960,50(4) ITAA 1997

87) sec 960,50(5) ITAA 1997

88) Division 42A in Schedule 2E ITAA 1936

89) Subdivision 230-A ITAA 1997

90) Division 240 ITAA 1997

91) Division 250-E ITAA 1997

92) Division 16D of Part III ITAA 1936

93) Division 16E of Part III ITAA 1936

- 평균환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함
- 또한, 금융기관 등에서 제시한 환율로 개산(approximation)할 수 있음

□ 해외소득의 환산특례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차기까지 호주로 송금되지 않을 경우, 소득의 발생시점의 환율이나 평균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함⁹⁴⁾

라. 기능통화환산 규정(Functional Currency Rules)

1) 개관

□ 기능통화환산 규정 적용 대상자는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과세소득의 계산을 선택할 수 있음.

- 도입목적 : 납세협력비용(compliance cost)을 감소시키고 실무적 필요(commercial practice)를 반영하기 위함⁹⁵⁾
- 회사법상 근거 : 회사법(Company Act 2001) sec. 292
- 2003년 7월 1일에 기능통화환산 규정이 도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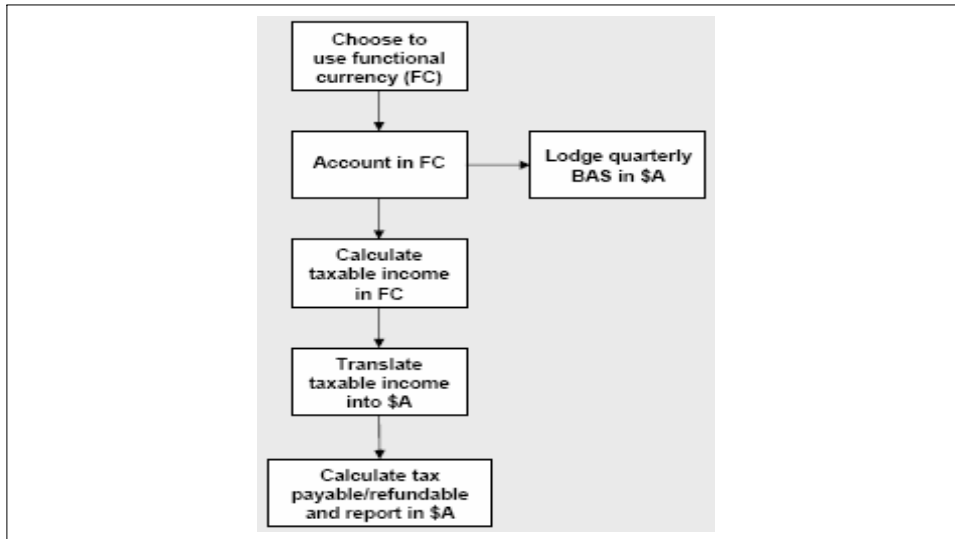
□ 환산방법 : 기능통화환산 규정은 일반외화환산 규정의 예외임

- 기능통화환산 규정 : 기능통화로 과세소득 결정 후 → 호주달러로 환산
- 일반외화환산 규정 : 외화 → 호주달러로 환산 후 과세소득 결정

94) <http://www.ato.gov.au/businesses/content.asp?doc=/content/57624.htm>

95) sec. 960.59 ITAA 1997

[그림 Ⅲ -1] 기능통화환산 방법



자료: ATO, <http://www.ato.gov.au/corporate/>

2) 적용대상자

□ 기능통화환산 규정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자⁹⁶⁾

- 회사법 제292조(sec. 292 of Company Act 2001)에 따라 재무보고를 준비하여야 하는 거주자 :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실체로서 다음과 같음.
 - 공시하는 실체(disclosing entities)
 - 상장회사(public companies)
 - 대규모회사(large proprietary companies)
 - 기타 등록된 실체(all registered entities) 등
- 호주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해외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호주의 거주자
- 해외금융조직(offshore banking unit)
- CFC 귀속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96) sec. 960.60 ITAA 1997

- 양도신탁(transferor trust)

3) 적격기능통화

☐ 적정기능통화(applicable functional currency)

- 적정한 기능통화는 기능통화를 사용할 것을 선택한 시점에 장부를 기록하기 위한 유일하거나 지배적인 통화임⁹⁷⁾
- 비기능통화(non-functional currency)의 수취와 지급 : 수취되거나 지급된 비기능통화는 일반외화환산 규정에 따라 기능통화로 환산되어야 함
 - 따라서 호주달러도 외화로 간주되어 환산됨

☐ 기능통화로 표시될 환산대상금액(amount)은 다음과 같음⁹⁸⁾

- 통상소득(ordinary income)
- 비용(an expense)
- 채무(an obligation)
- 부채(a liability)
- 수입금액(a receipt)
- 지급금액(a payment)
- 대가(consideration)
- 가치평가(a value)
- ITAA와 호주연방의 법률상 한도나 금액

4) 적격기능통화의 선택

☐ 기능통화환산 규정 적용시점⁹⁹⁾

97) sec. 960.70(1) ITAA 1997

98) sec 960.80(2) ITAA 1997

99) sec. 960.60 ITAA 1997

- 선택을 한 시점을 포함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적용
- 다만, ‘소급개시(backdated startup)’를 선택하는 경우: 선택을 한 시점을 포함한 과세연도 이후의 과세연도 소득부터 적용

□ 적정기능통화 선택은 서면에 의한. 신청서류에 기입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신청하는 실체(entity)의 이름과 사업자번호(tax file number)
- 기능통화의 사용처. 예를 들어, 과세소득의 계산에 사용
- 기능통화의 적용일자
- 기능통화로 사용할 계정
- 신청서류의 작성일자와 담당자의 서명

□ 선택의 취소(withdrawing)와 대체(substituting)

- 취소: 이전에 선택한 적정기능통화가 기장을 위하여 유일하거나 지배적인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능통화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음¹⁰⁰⁾
 - － 취소한 과세연도가 종료한 다음 과세연도부터 취소됨¹⁰¹⁾
- 대체: 이전의 적정기능통화를 취소한 후, 새로운 기능통화를 선택할 수 있음¹⁰²⁾
 - － 취소 후 대체하지 않을 경우, 일반외화환산 규정에 따라 환산됨

5) 과세소득의 계산

가) 기능통화에 의한 과세소득 계산

- 기중에는 적정기능통화로 장부를 작성함.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 납세자는 적정기능통화로 과세소득을 계산함. 적정기능통화로 표시되는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음
 - 회사법(Company Act 2001) 제292조에 따라 재무보고를 준비하는 호주 거주자: 당해 과세연도 과세소득

100) sec. 960.90 ITAA 1997

101) sec. 960.90(1) ITAA 1997

102) sec. 960.90(3) ITAA 1997

- 해외에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호주거주자, 또는 호주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 당해 과세연도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과세소득
- 해외금융조직(offshore banking unit) : 당해 과세연도에 해외금융조직에서 발생한 과세소득
- CFC 귀속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 법정 회계연도에 대하여 CFC 귀속소득
- 양도신탁 : 당해 과세연도에 대하여 귀속소득(attributable income)
- 간접부동산지분인 자산과 관련하여 CGT 사건이 발생한 납세자 : 당해 과세연도에 대하여 자본손익

□ 기중 적정기능통화가 아닌 통화의 거래가 있는 경우 적정기능통화로 환산하여야 함

- ① 적정기능통화가 아닌 금액은 적정기능통화로 환산함
- ② 이때 sec. 995.1(1)에 의한 외화의 정의는 적용하지 않음
- ③ 기능통화는 외화로 간주되지 않음
- ④ 호주통화와 기타의 통화는 외국통화로 간주함¹⁰³⁾
 - 적정한 환율로 기능통화로 환산함
 - 적정한 환율은 일반환산규정에 의한 환율임

〈사례〉 외화환산손실

- US\$를 기능통화로 함. 하지만, 자산을 A\$10,000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함
- year 1 :
 - 계약 시 환율 : A\$1.00 = US\$0.50
 - 기능통화로 표시되는 원가는 US\$5,000
- year 2 :
 - 13개월이 경과 후 자산의 보유 시 환율 : A\$1.00 = US\$0.55
 - 기능통화로 표시되는 원가는 US\$5,500
 - US\$5,500을 지급하여, 최초의 US\$5,000의 자산을 취득함.
- year2에 인식할 외화실현손실
 - 외화실현사건 4에 해당되어, US\$500의 외화실현손실이 인식됨.

103) sec 207,20(1) ITAA 1997

□ 적정기능통화 과세소득의 계산

- 법에 규정된 한도나 금액(value) : 적정한 환율에 의해서 기능통화로 환산함
- 이월결손금 : 기능통화로 과세소득을 계산한 후, 과세소득에서 제외함
- 이월결손금을 감소시키는 조세감면액 : 감면액이 발생하여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때에, 이월결손금을 감소시키는 조세감면액을 기능통화로 환산함

〈사례〉 한도의 환산

- USD를 기능통화로 선택함.
- year 1 : USD 40,000으로 차량을 구입. 이때 구매자금은 호주달러로 A\$ 72,700임.
- ITAA 1997 sec. 40-230에 의한 year 1의 차량한도(car limit) : A\$ 60,000임.
- 따라서 기능통화로 환산된 한도 : $\text{USD } 40,000 \times \frac{\text{A\$ } 60,000}{\text{A\$ } 72,700} = \text{USD } 33,012$

□ 기능통화 적용 이전에 발생한 거래금액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능통화로 환산하여야 함

- 이전에 기능통화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 다음의 순서로 환산함
 - 먼저,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현행 환율에 의해서 호주달러로 환산함
 - 다음으로, 기능통화를 유효하게 적용하기 시작한 시점 현재의 환율에 의해서 기능통화로 환산함
- 이전에 다른 기능통화를 선택한 경우
 - 먼저,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현행 환율에 의해서 이전의 기능통화로 환산함
 - 다음으로, 기능통화를 유효하게 적용하기 시작한 시점 현재의 환율에 의해서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함

〈사례〉 기능통화 적용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처분

- 호주에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회사임
 - 기능통화를 JPY으로 함.
 - year 1 : 기능통화를 JPY로 선택함. 기능통화는 year 2부터 적용됨.
 - year 3 : 해당 외국회사는 부동산을 JPY 600백만에 처분함. 동 부동산은 year 1 이전에 JPY 500백만으로 취득한 것임.
 - 취득시점 환율 : A\$1.00 = JPY68.50
 - 기능통화 선택 시점 환율 : A\$1.00 = JPY 68.00
- 조정된 취득원가 : $\frac{\text{JPY } 500,000,000}{68.50} \times 62.00 = \text{JPY } 452,554,744$
- 자본이득 = JPY 600,000,000 - JPY 452,554,744 = JPY 147,445,256

나) 기능통화로 계산된 과세소득을 호주달러로 환산

□ 과세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에 적정기능통화로 작성된 과세소득은 호주달러로 환산되어야 함.

□ 적정기능통화로 표시된 과세소득을 호주달러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 :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함¹⁰⁴⁾

○ 평균환율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 평균환율 계산 기간 :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 다만, 합리적 개산(reasonable approximation)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균환율의 사용이 불가능함

○ 과세연도 말 현재의 환율

□ 적정기능통화로 표시된 환산대상 금액을 호주달러로 환산할 경우의 특례

○ 환산대상 금액의 계산에 구성요소로 들어가는 금액도 환산하여야 하는 경우 : 그 구

104) ITAA 1997 Reg 960.80.30

성요소를 먼저 환산한 후, 환산대상 금액을 환산함¹⁰⁵⁾

－ 다만, 환산대상 금액에는 특별발생금액(special accrual amounts)을 제외함

○ 특별발생항목의 경우, 기능통화로 환산하지 않고 바로 호주달러로 환산함¹⁰⁶⁾. 특별 발생항목은 과세소득에 증가와 감소를 일으키는 항목으로 다음과 같음

－ 고급차의 리스계약에 의해 발생한 항목¹⁰⁷⁾

－ 금융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항목으로, ① 금융계약의 손익에 관련된 발생액과 ② 금융계약에 의해서 특정한 외화로 수취된 금융상 효익¹⁰⁸⁾

－ 매매형식을 통한 금융조달에 관련된 항목¹⁰⁹⁾

－ 조세혜택이 있는 리스관련 항목¹¹⁰⁾

－ 자산의 사용에 관한 특정계약에 관련된 항목¹¹¹⁾

－ 발생소득이 이연되는 유가증권에 관련된 항목¹¹²⁾

6) 납부세액의 계산

□ 납부세액의 계산과 환산

○ 외국납부세액공제(FTC) :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지 않음. 따라서 일반외화환산규정이 적용되고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외국납부세액은 그 세액이 지급되었을 때 호주달러로 환산함

○ 배당세액공제(Franking credit) : 배당세액공제액은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세액을 감소시킴. 기능통화로 환산하지 않고 직접 호주달러인 배당세액을 가산함

105) sec 960,80(4) ITAA 1997

106) sec 960,80(5) ITAA 1997

107) sec 995,1 ITAA 1997, Division 42A in Schedule 2E ITAA 1936

108) sec 995,1 ITAA 1997, Subdivision 230-A ITAA 1997

109) sec 995,1 ITAA 1997, Division 240 ITAA 1997

110) sec 995,1 ITAA 1997, Division 250-E ITAA 1997

111) sec 995,1 ITAA 1997, Division 16D of Part III ITAA 1936

112) sec 995,1 ITAA 1997, Division 16E of Part III ITAA 1936

- 세액공제와 환급세액(tax offset and rebates) : 과세소득의 계산에 사용되지 않음. 따라서 일반외화환산규정이 적용됨. 즉, 기능통화로 환산하지 않음

〈사례〉 외국납부세액(FTC)

- 적정기능통화로 USD를 선정함.
- 소득발생시점의 환율 : $\text{JPY } 115 = \text{USD } 1.00 = \text{A\$ } 2.00$
- JPY 11,500의 소득이 발생. 이 중 현금은 10,350이고, 1,150은 원천징수됨
-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먼저 JPY 11,500을 USD 100으로 환산함
- 과세소득은 연말에 A\$로 환산되어야 함. 과세소득의 보고시점과 발생시점이 달라서, USD와 A\$ 간의 상대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함
- 연말 환율 : $\text{USD } 1.00 = \text{A\$ } 1.75$
- 과세소득 : $\text{USD } 100 = \text{A\$ } 175$
- FTC : 원천징수된 금액은 지급된 시점의 환율로 환산함. 즉, $\text{JPY } 1,150 = \text{A\$ } 200$

〈사례〉 배당세액공제 (Franking Credit)

- $\text{USD } 1.00 = \text{A\$ } 2.00$
- USD를 기능통화로 선택함
- 기과세된 배당금액 A\$ 70을 수취함: 현금 A\$ 70, 배당소득가산액(gross-up 금액) A\$ 30
- 과세소득금액 A\$ 100을 기능통화로 환산함: $\text{A\$ } 100 = \text{USD } 50$
- 연말에 USD 50를 규정에 따른 환율로 환산함

7) 세무신고서

- ☐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의 경우, 기능통화로 표시된 항목을 호주달러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함. 환산은 다음의 순서에 의함

- ① 적정기능통화로 분기소득(installment income)을 환산
- ② 적절한 환율로 호주달러로 환산함
- ③ 이를 BAS의 lable T1에 기입함

- ☐ 법인세 신고(company tax return)의 경우, 기능통화로 표시된 항목을 호주달러로 환산

하여 신고해야 함

- 모든 법인세 신고서상 금액은 호주달러로 표시되어야 함
- 다만, label 금액을 기능통화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그 총액은 과세소득의 환산에 사용했던 동일한 기능통화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하여야 함
- 호주달러로만 표시해야 하는 항목 : label 7J Francking Credit, label 7C Australian franking credits from a New Zealand Company.
- 신고서 완성 전까지 호주달러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항목 : label 7R Tax loss deducted, label 7S Tax loss transferred in. 세무상 결손금은 과세소득에서 공제가능함. 결손금을 이월시키는 경우, 기능통화로 관리함. label 7R은 기능통화환산환율로 환산함
- 기능통화환율 (label 8N) : 기능통화표시 과세소득을 호주달러로 환산하는 환율. 기능통화환율은 동액의 호주달러를 얻기 위해서 기능통화로 나누어 주는 금액임

3. 국제비교

- 우리나라와 미국, 호주의 세무상 기능통화제도와 국내사업장에서의 외화환산세무, 해외사업장에서의 외화환산세무를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세무상 기능통화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1월 기업회계상 기능통화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세무상으로는 아직 이에 대한 대응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반면 미국과 호주의 경우 세법에 기능통화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어 회계상 기능통화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토록 하고 있음
 - 그리고 기능통화로 계산한 과세소득을 평균환율 또는 기말환율 등 적정환율을 이용하여 자국통화로 환산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표 III -2〉 세무상 기능통화제도

	우리나라	미 국	호 주
기능통화제도 도입여부	• 미도입 – 기업회계상 2009년 1월 도입된 반면, 세무상 기능통화의 개념은 없음	• 연방소득세법상 도입 •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¹⁾는 달러 이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할 수 있음	• ITAA 1997에 도입 • 회사법 292조에 의하여, 기능통화를 도입한 법인 등이 적용 가능
기능통화의 정의	• 정의된 바 없음 – 참고로, 기업회계상 기능통화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를 의미함	•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환경의 통화를 의미함	• 장부를 기록하기 위한 유일하거나 지배적인 통화
세무조정시 기준 재무제표	• 원화로 작성된 재무제표	•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	•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
과세소득 계산방법	• 원화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함	• 기능통화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함 • 기능통화로 계산한 과세소득을 소득에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평균환율을 이용하여 미국 달러로 환산함	• 기능통화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 • 기능통화로 표시된 과세소득을 평균환율이나 기말환율로 호주달러로 환산함.
세무신고시 보고통화	• 원화	• 미국 달러	• 호주달러

주: 1)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란 별도로 장부를 기장하는 구분가능하고 명확히 식별이 가능한 거래단위 또는 사업단위를 의미함

나. 국내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

□ 국내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상 기능통화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화를 기준으로 외화거래손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세기간 말 평가한 외화평가손익의 경우 미실현손익에 해당하므로 과세소득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미국 및 호주의 경우 세무상 기능통화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어 기능통화를 기준으로 외화거래손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양 국가 모두 세무상 외화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표 III -3〉 국내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

	우리나라	미 국	호 주
기중 거래시 : 거래손익	-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된 항목이 발생한 경우 - 원화로 환산하여 기록함 -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된 항목이 결제된 경우 - 거래손익을 당기손익으로 과세함	-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된 항목이 발생한 경우 -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기록함 -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된 항목이 결제된 경우 ① 외화자산·부채 - 연방소득세법상 외화거래³⁾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소득으로 과세함 - 연방소득세법상 외화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 자산·부채의 처분손익에 포함하여 일반손익 또는 자본손익으로 과세함 ② 파생상품 - 원칙규정 - 비기능통화로 표시된 선도계약, 선물계약, 옵션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관련 거래손익은 외환손익으로 간주하여 일반소득으로 과세함 - 선택규정 - 파생상품이 자본자산에 해당하고 스트래들의 일부가 아닌 경우 관련 외환손익을 자본손익으로 과세할 수 있음 - 외화헤지거래 - 외화거래가 요건을 충족하는 외화헤지거래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외화헤지거래를 구성하는 모든 거래를 통합하여 단일의 거래로 보아 관련 손익을 일반소득으로 과세함	- 호주달러 이외의 통화의 거래로 인한 거래의 경우, 외화실현사건(FRE)이 발생할 경우, 과세소득에 포함. - 외화실현사건 1 : 외화나 외화를 받을 권리를 다른 실체에 처분하는 경우. - 외화실현사건 2 : 외화를 받을 권리가 중단되는 경우. - 외화실현사건 3 : 외화를 수취해야 할 의무가 중단되는 경우. - 외화실현사건 4 : 외화를 지급할 의무가 중단되는 경우. - 외화실현사건 5 : 외화를 지급할 권리를 중단하는 경우.

〈표 III -3〉의 계속

	우리나라	미 국	호 주
기말 평가사: 평가손익	① 외화자산·부채 - 일반법인: 인정하지 않음 - 금융기관: 인정함 ¹⁾ ② 파생상품 - 일반법인: 인정하지 않음 - 금융기관: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에 대해 인정함 ²⁾	① 외화자산·부채 - 인정하지 않음 ② 파생상품 - 인정하지 않음 - 공정가치평가대상: 장내 선물계약 및 비주식옵션과 관련하여 40/60 규칙 ⁴⁾ 을 적용하지 않고 외화거래 규정을 적용하여 전액 일반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외화헤지거래: 외화거래가 외화헤지거래를 구성하는 경우 공정시장가치 평가는 적용되지 않음	외화실현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평가손익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주: 1)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규정은 강제규정이므로 당해 금융기관이 결산상 평가손익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세무상 평가액의 차이를 세무조정하여야 함

2)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i)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ii)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금융기관에 대해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정하는 이유는 외환매매가 주업에 해당하고, 파생상품을 통한 환위험헤지 효과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것임

3) 부채계약의 취득 또는 부채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된 경우, 추후 납부하거나 수취할 비용 또는 소득의 발생, 비기능통화의 처분

4) 과세사업연도 말까지 보유하면 IRC §1256에 따라 공정시장가치로 평가받는 장내 선물계약 및 비주식옵션의 경우 외화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관련 거래손익은 IRC §1256을 적용하여 40/60 규칙에 따라 40%는 단기자본손익으로, 60%는 장기자본손익으로 과세함

다.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

□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외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정환율을 이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후 환산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과세소득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재무제표 환산방식을 택하고 있음

○ 반면, 미국 및 호주의 경우 세무상 기능통화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어 국내사업장 역

시 외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세무는 국내사업장의 외화환산세무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 즉, 외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외화로 과세소득을 계산한 후 이를 적정환율을 이용하여 자국통화로 환산한 후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표 Ⅲ - 4〉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

	우리나라	미국	호주
재무제표 환산	•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함 ① 방법1 - 화폐성 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기타 자산·부채 및 손익항목은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로 환산 - 환산차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② 방법2 - 대차대조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손익 계산서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환율로 환산 - 환산차손익은 자본항목으로 처리 ③ 방법3 - 모든 항목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환산 - 환산차손익은 자본항목으로 처리	•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의 경우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기능통화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므로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해 재무제표를 환산할 필요는 없음 • 단, 미인식 외환손익의 계산을 위해 재무제표를 환산함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와 같은 marked item의 경우 기말환율로 환산해야 하므로 미인식 외환손익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대차대조표상 자본항목으로 처리됨 • 미인식 외환손익은 송금시점에 송금비율에 따라 또는 해외사업장의 폐쇄 시점에 전액 손익으로 인식됨	• 일반환산규정에 의하여 환산. 다만, 기능통화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함. • 원칙 : 상황에 비추어보아 합리적인 환율로 환산함. •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원가 : 자산을 유지하기 시작하기 위한 대가로 의무를 부담하고 자산을 보유하기 전에 의무가 이행되었다면, 자산의 원가는 자산의 보유가 시작된 시점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 • 재고자산 :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유를 시작한 시점의 환율로, 시장판매가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과세연도말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 • 기타 수취하거나 지급한 금액 : 수취하거나 지급한 시점에 적용되는 환율로 환산

〈표 III -4〉의 계속

	우리나라	미국	호주
과세소득 계산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함	-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의 경우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기능통화로 과세소득을 계산함 - 기능통화로 계산된 과세소득을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의 해당 과세기간 동안 평균환율을 이용하여 미국 달러로 환산함	- 일반환산규정에 의하여 환산 - 통상소득(ordinary income)의 경우에는 통상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이나 그 이전에 그 금액이 수취되는 시점의 실제환율로 환산 - 자본이득이 제외되는 법정소득의 경우에는 법정소득이 과세소득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시점, 또는 그 전에, 수취될 때에는 수취하는 시점에 실제환율로 환산함. - 필요경비의 경우, 필요경비가 공제가능한 시점이나 그 이전에 지급되는 때에는 그 지급시점에 환산
세무신고 통화	원화	미국 달러	호주 달러

IV. 세무상 기능통화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

1. 세무상 기능통화제도의 도입

가. 도입 필요성

□ 2009년 1월 회계상 기능통화제도의 도입으로 원화 외에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환경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능통화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 법인세법에서는 원화가 기능통화인 경우만을 전제로 과세소득과 납부세액의 계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원화 이외의 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과세소득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음

－ 다만, 해외사업장에 한해 재무제표를 외화로 작성한 경우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할 목적으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 회계상 도입된 기능통화제도에 따라 내국법인이 회계상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신고 목적으로 별도로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중장부 체제를 유지해야 함

○ 그러나 회계상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신고 목적으로 작성한 별도의 원화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음

나. 도입방법

□ 국내 사업장이 회계상 기능통화제도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세무상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음

○ (1)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법

- 현행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에 대한 외화환산 세무를 따르는 방법임
- 이를 위해서는 회계상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외에 법인세 신고 목적으로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작성한 재무제표가 별도로 필요함

○ (2)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를 따르는 방법

- 현행 법인세법상 해외사업장에 대한 외화환산 세무를 따르는 방법임
- 세무상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작성한 별도의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법인세 신고 목적으로 기말에 원화로 환산한 후 이에 기초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임
- 동 방법은 외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인정하므로 세무상 기능통화제도가 도입된 것과 다름이 없음
- 이는 재무제표 환산시 적용하는 환율에 따라 기본통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시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 세 가지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Ⅳ-1>에서 항목별 적용환율을 참고할 것

○ (3)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 미국과 호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세무상 기능통화제도하에서 과세소득의 계산방식을 따르는 방법임
- 세무상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여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기능통화로 표시된 과세소득을 원화로 환산함

□ 상기 세 가지 방법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Ⅳ-1>과 같음

〈표 IV-1〉 세무상 기능통화제도의 도입 방안

구분	이중 장부	세무조정시 기준 재무제표	항목별 적용환율	재무제표 환산차손익	과세소득의 계산	적용례
(1) 현행 제도 유지 방법	○	원화로 작성한 재무제표	• 모든 항목: 역사적 환율	발생하지 않음	원화	우리나라: 국내사업장에 대해 적용
(2) 해외사업장 의 외화환 산세무 준 용방법	×	기능통화로 작 성한 재무제표 를 적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로 환산한 재 무제표	• 화폐성 자산·부채 : 기말환율 • 기타항목: 역사적 환율	당기손익으로 인식	원화	우리나라: 해외사업장에 대해 적용
			• 대차대조표 항목 : 기말환율 • 손익계산서 항목 : 평균환율	자본항목으로 처리	원화	
			• 모든 항목 : 기말환율	자본항목으로 처리	원화	
(3) 기능통화제 도 도입방 법	×	기능통화로 작 성한 재무제표	• 해당사항 없음 ¹⁾	자본항목으로 처리	기능통화 ²⁾	미국, 호주

주: 1) 단, 미국의 경우 본점으로 송금하는 경우 지점에 누적된 미인식외환손익을 본점의 과세소득에 반영할 목적으로 미인식외환손익의 계산을 위해 대차대조표를 환산하도록 하고 있음

2) 기능통화로 계산한 과세소득을 적정환율(평균환율 등)을 이용하여 원화로 환산함

□ 방법(1)의 장·단점

-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을 거래시점의 환율을 이용하여 원화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소득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회계상 기능통화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상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별도로 요구하므로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음

□ 방법(2)와 방법(3)의 장·단점

- 방법(2)와 방법(3)의 경우 외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법인세 신고용으로 별도의 장부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납세자의 세무조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적용환율 및 어떠한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리

계산되어 방법(1)과 비교하여 납부세액이 정확하지 않고 과세형평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방법(2)와 방법(3)의 차이점

- 기능통화로 표시된 항목을 원화로 환산하는 시점에 있어서 두 방법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방법(2)의 경우 재무제표까지 기능통화로 계산하고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한 후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재무제표 환산방법’을 택하고 있는 반면, 방법(3)의 경우 과세소득까지 기능통화로 계산하고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세소득 환산방법’을 택하고 있음
- 그리고 재무제표 환산시 및 과세소득 금액 환산시 적용환율에 따라 방법(2)와 방법(3)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방법(2)에서 손익항목을 평균환율로 환산하는 기본통칙 제2호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 방법(2)를 사용하여 계산한 과세소득 금액은 방법(3)의 금액과 유사하게 됨
 - 단, 자산·부채 항목의 경우 방법(2)의 경우 기말환율로 평가하는 반면, 방법(3)의 경우 과세소득을 평균환율로 환산하므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자산·부채 항목 역시 평균환율로 환산되는 셈임
 - 따라서 대차대조표 항목에 기초한 세무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 방법(2)에 따라 계산된 과세소득 금액과 방법(3)에 따른 과세소득 금액은 차이가 발생하게 됨
 - 방법(2)에서 손익항목을 기본통칙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거래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경우에는 방법(1)과 유사한 과세소득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음
 - 단, 방법(2)에서는 대차대조표 항목을 모두 기말환율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대차대조표 항목에 기초한 세무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 방법(1)의 과세소득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임
 - 방법(2)에서 기본통칙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 기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경우 방법(3)에서 과세소득을 평균환율을 적용하는 대신 기말환율을 적용한다면 방법(2)와 방법(3)의 과세소득 금액은 동일할 것임

□ 세무상 기능통화제도를 도입시에는 상기 각 방법의 장·단점을 기초로 하여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가장 우수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임

○ 납세협력비용

－ 납세협력비용은 회계상 재무제표가 기능통화로 작성된 경우 세무조정액의 용이성에 관한 것임

- 이는 (a)세무상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는 별도의 재무제표가 필요한지 여부, (b) 세무상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율적용의 용이성, (c)세무조정시 근거가 되는 증빙상 금액과 세무조정 금액간의 대사의 용이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특히 (c)의 세무조정시 관련 증빙 대사의 용이성과 관련하여 방법(2)의 재무제표 환산방법의 경우 세무조정 금액은 원화로 되어 있으나 관련 증빙은 대부분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금액의 대사를 위해 별도의 환산 과정이 필요함. 그러나 방법(3)의 경우 세무조정 금액이 기능통화로 되어 있어 관련 증빙과의 대사가 더욱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과세형평

－ 과세형평 문제는 어떠한 방법을 적용했는지에 관계없이 납부세액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임

- 이는 (a)어떠한 통화를 기능통화로 하는지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지는 여부, (b)국내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 대한 과세처리의 일관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국제적인 추세

－ 국제적인 추세는 회계상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 세무상 어떠한 방식으로 기능통화제도를 적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임

○ 앞서 논의한 도입방안 세 가지를 위의 각 사항에 대해 우월한 정도의 순위를 매겨보면 다음 <표Ⅳ-2>와 같음

〈표 IV-2〉 기능통화제도 도입방안 순위

항목		판단사항	순위
납세협력비용		이중장부, 환율적용의 용이성, 세무조정시 관련증빙의 대사문제 등	(3)»(2)»(1)
과세형평	기능통화가 원화인 경우와 외화인 경우	납부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	(1)»(2), (3)
	국내사업장과 해외사업장	납부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1), (3)
국제적인 추세		주요국가에서 도입한 제도와의 균형	(3)» (1), (2)

□ 결론적으로,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측면에서는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는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법(1)이 가장 우수하나 이는 납세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 비용을 요구하므로 회계상 기능통화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세무상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이 때 세무상 기능통화제도의 도입방안으로 방법(2)의 경우 현행 제도상 해외사업장에 대한 과세조치와의 균형을 위해서는 우수한 방법이기도 하나 이보다는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방법(3)이 가장 우수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미국과 호주의 경우 국내사업장 혹은 해외사업장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방법(3)을 따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과 해외사업장간의 균형을 위해 오히려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 방식을 방법(2)에서 방법(3)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세무상 기능통화제도 적용시 고려사항

□ 세무상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재무제표 작성시 기준이 되는 통화는 원화가 아니라 기능통화이며, 외화거래는 원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아니라 비기능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해당함

- 세무상 기능통화제도의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재무제표 작성시점, 재무제표 환산시점, 과세소득 계산시점 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재무제표 작성시점

1) 외화거래의 최초인식

- 세무상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거래의 기록은 기능통화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비기능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시점의 환율을 이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되어야 함
 - 이는 회계상 처리방법과 동일하므로 세무상 별도의 조정 조치가 필요없으며, 따라서 거래의 최초 인식시점에서 회계상 장부와 세무상 장부는 일치하게 됨

2) 기중 외화거래의 결제

- 세무상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당기 과세소득에 반영되어야 할 외화거래손익은 비기능통화로 이루어진 거래에서 발생함
 - 비기능통화로 표시된 자산·부채를 수취하거나 결제하는 시점에 해당 자산·부채를 인식한 시점과 수취하거나 결제한 시점간에 기능통화와 비기능통화간 환율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외화거래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 － 즉, 외화거래손익은 원화와 외화 사이의 환율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통화와 비기능통화 사이의 환율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임
- 이는 회계상 처리방법과 동일하므로 세무상 별도의 조정 조치가 필요없으며, 따라서 기중 거래시점에서 회계상 장부와 세무상 장부는 일치하게 됨

3) 기말 외화평가

-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외화평가손익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미실현손익이라는 이유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세무상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사항임
 - 회계상 기능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기말 대차대조표상 항목 중 비기능통화로 이루어진 화폐성 항목은 기말 환율을 이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될 것임
 - － 따라서 과세소득 계산시 비기능통화로 이루어진 화폐성 항목에 대한 외화평가손익은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을 통해 당기손익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함

나. 재무제표 환산시점

1) 재무제표 환산환율의 결정

- 세무상 기능통화제도의 도입하는 경우 방법(2)의 재무제표 환산방법을 선택한 경우 과세소득 금액의 계산을 위해 재무제표상 기능통화로 표시된 금액은 적정환율을 이용하여 원화로 환산되어야 함
 - 재무제표 환산시 적용할 환율로는 다음이 있음
 - － 방법(2)에서 제시한 현행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해외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세가지 선택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 － 또한 기업회계에서 기능통화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 그런데 재무제표를 기말환율 또는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식은 납세편의성을 제고할 수는 있으나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 회계상 이익과 이에 기초한 과세소득이 크게 왜곡될 수 있음
 - 따라서 과세기간 중 환율이 급격히 변동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적용환

율을 적절히 조정해 주는 입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통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미국 달러로 기록하고 미국 달러 유사구분거래법(DASTM)에 따라 기능통화로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거래손익을 달러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호주의 경우 과세소득 환산시 적용하는 환율과 관련하여 기능통화로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의 환율을 이용한다던가, 일시적이고, 거액의 손익, 또는 통상의 이익이 아닌 손익 등에 대해서는 평균환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보완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음

2) 재무제표 환산차이에 대한 처리

- 재무제표 환산시 기초 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환율과 기말 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환율과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제표 환산차이의 경우 현행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처리방식은 다음과 같음
 - 기업회계에서는 동 외환차이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외환차이누계액을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해두었다가 해당 사업장이 처분되는 시점에 손익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
 -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경우 해외사업장에 대한 재무제표 환산차이를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손익을 거래시점의 환율로 평가한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손익을 평균환율 및 기말환율로 평가한 경우에는 자본항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재무제표 환산차이를 자본항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처분하거나 폐쇄하는 시점에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인식토록 하고 있음
- 세무상 기능통화제도의 도입방안으로 방법(2)의 재무제표 환산방법을 택한 경우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무제표 환산차이에 대해서도 해외사업장의 경우와 같이 현행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방식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임

□ 그런데 세무상 기능통화제도의 도입방안으로 방법(3)의 과세소득 환산방식을 적용하는 미국의 경우 특이할만한 점은 본점으로 송금시 동 재무제표 환산차이 중 일부를 본점의 과세소득으로 인식한다는 것임

○ 미국에서는 기능통화가 서로 다른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간에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발생시점의 환율과 이전시점의 환율 차이에 대해서도 외환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 그 이유는 기능통화가 서로 다른 사업단위간에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된 자산이 재무제표상에 기록되는 기능통화가 변경되므로 해당 자산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업단위 단계에서 변경 후의 기능통화로 장부를 기록해왔다면 발생했을 외환손익을 이전시점에 인식하기 위한 것임

－ 그리고 자산을 수취한 사업단위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자산이전시점의 환율을 이용하여 해당 사업단위의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기록하는 것임

○ 그리고 본점 송금시 역시 자산이전시와 비슷한 논리로 송금액이 해당 지점의 영업결과에 기초한 것임을 고려하여 재무제표 환산차이 중 전체 대차대조표 금액 대비 송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당기 본점의 과세소득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

－ 재무제표 환산차이를 송금시점에 과세하는 방식은 본점으로서의 송금시점이 송금액 부분에 해당하는 환산차이가 실현되는 시점이라고 보는 시각을 반영하는 것임

□ 이와 같은 미국의 처리방식은 재무제표 환산차이에 대해 해당 사업장을 처분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환산차이에 대한 과세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다. 과세소득 계산시점

□ 현행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및 납부세액 계산 관련 기준은 모두 원화금액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3)을 택한 경우 세무조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법상 원화 기준금액은 기능통화로 환산되어야 함

- 과세소득이 기능통화로 계산되기 위해서는 기능통화로 계상된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기까지의 과정인 세무조정 역시 기능통화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임
- 한편, 방법(2)의 재무제표 환산방법을 택한 경우 원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면 되므로 현행 세법상 원화기준 금액을 그대로 따르면 될 것임

□ 현행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시 기준이 되는 금액을 원화로 표시하고 있는 규정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Ⅳ-3〉 원화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있는 세법규정 사례

구 분	내 용										
법인세법 §25①	○ 접대비 한도계산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함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 기본금액(①) + 수입금액기준(②) ①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 ② 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접대비 한도액 <table><tr><th>수입금액</th><th>적용률</th><th>비고</th></tr><tr><td>100억원 이하</td><td>1만분의 20</td><td rowspan="4">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금액의 20%</td></tr><tr><td>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td><td>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td></tr><tr><td>500억원 초과</td><td>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td></tr></table>	수입금액	적용률	비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금액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수입금액	적용률	비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금액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법인세법 시행령 §88③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자산의 고가매입 : (매입가액-시가)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자산의 저가양도 : (시가-양도가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 (세법상 인정이자- 회사의 이자수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세법상 인정이자(시가)의 5% 이상인 경우 금전 외의 자산·용역의 저가제공: (적정임대료 등 - 수령한 임대료 등)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적정임대료 등(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조특법시행령 §2①	○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구 분	내 용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함 단,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 즉, 방법(3)의 과세소득 환산방식으로 세무상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세무조정이 기능통화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세법상 원화로 표시된 세무조정 기준금액은 기능통화로 환산되어야 하며, 이 때 적용할 적정환율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필요함
- 예를 들어, 세법상 원화 기준금액 중 손익항목에 대해서는 평균환율을, 자산·부채 항목에 대해서는 기말환율 등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토록 함으로써 기능통화로도 세무조정이 가능한 입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3. 최초 적용기업 및 변경기업에 대한 고려사항

- 세무상 기능통화제도의 도입 및 변경으로 새로운 기능통화를 적용하게 된 기업의 경우 방법(3)의 과세소득 환산방법하에서는 원화(또는 이전의 기능통화)로 작성된 기초 재무제표 및 세무상 유보액을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하여야 함
- 이 때 고려하여야 할 관련 입법사항으로는 다음이 있음

가. 기초 재무제표 환산시 적용환율

- 기업회계의 경우 기능통화의 변경에 따른 효과는 전진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며, 기능통화가 변경된 날의 환율을 사용하여 모든 항목을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토록 하고 있음
- 기능통화제도를 최초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에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던 것을 외화로 변경하는 셈이므로 변경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을 따르면 될 것임

- 법인세법에서도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라면 기능통화제도의 도입취지가 세무상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납세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임을 고려했을 때 기능통화의 최초 적용 및 변경시 회계상 전진법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인정해야 할 것임
 - 단, 전진법에 따라 최초 적용 및 변경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환산하는 경우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되거나 또는 과세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임
 -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초 재무제표 환산결과 발생한 외환차이에서 다루기로 함

나. 기초 재무제표 환산시 외환차이

- 기초 재무제표를 기능통화가 원화에서 외화로 변경된 날의 환율을 이용하여 환산하는 경우 거래가 최초 발생한 시점의 환율과 기능통화가 변경된 시점의 환율 차이에 대해서는 손익인식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따라서 세무상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최초 도입 및 변경기업에 대해 기초 재무제표를 도입(변경)시점의 환율로 평가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환산차이에 대한 과세처리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동 외환차이를 회계방법의 변경(change in method of accounting)에 따라 조정해야 할 금액으로 보고 있음
 - 미국에서는 동일한 납세자의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사업장간에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최초 인식시점과 이전시점의 환율차이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외환차이를 변경시점에 과세하는 것 역시 일관성 있는 처리인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이 때 조정금액이 \$3,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이루어진 당해 과세연도 및 직전 2개 과세연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 기능통화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 및 변경기업의 경우 기초 재무제표 환산시 발생하는 외환차이에 대한 처리방안으로는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방안(a): 동 외환차이를 해당 자산·부채별로 세무상 유보액으로 별도로 관리해두었다가 해당 자산·부채를 처분 및 결제하는 시점 또는 기능통화를 다시 변경하는 시점이 해당하는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방법임

－ 이는 관련 세무조정이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음

－ 특히,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유보액을 포함하여 상각범위액을 설정하게 되면 회계상 상각범위액과 세무상 상각범위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세무조정이 더욱 복잡해지게 됨

○ 방안(b): 미국과 같이 동 외환차이가 발생한 시점의 과세연도 소득에 이를 포함하는 방법임

－ 이는 향후 세무조정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나 아직 미실현된 소득을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세법의 기본원리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음

－ 또한 기능통화를 도입 및 변경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이 급격히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어 이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과 비교하여 과세형평이 훼손될 수 있음

－ 특히, 과세소득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사례〉

- 납세자A는 기능통화제도를 최초 적용하여 기능통화를 원화에서 달러로 변경함
- 대차대조표 항목 중 하나인 건물의 최초거래시점, 기능통화가 최초로 적용된 과세연도의 기초, 기말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음
- 거래 발생시점의 환율로 평가한 \$1와 기능통화가 변경된 시점의 환율로 평가한 \$0.833의 차이인 \$0.167의 손실이 발생함

	최초 거래시점	기능통화 최초적용(변경) 과세연도의 기초	기말
환율	\$1=W1,000	\$1=W1,200	\$1=W1,300
장부가액	W1,000	\$0.833(*)	\$0.833(*)

(*) \$1=W1,200의 환율을 적용함

☞ 방안(a)를 적용하는 경우 세무조정

기능통화 최초적용(변경)시점 :	손금산입) 외환손실 \$0.167(기타)
	익금산입) 건물 \$0.167(유보)
건물의 처분 및 기능통화 재변경시점:	손금산입) 건물 \$0.167(△유보)
☞ 방안(b)를 적용하는 경우 세무조정	
기능통화 최초적용(변경)시점 :	손금산입) 외환손실 \$0.167(기타)

-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납세편의성을 제고하는 차원임을 감안한다면 동 외환차이에 대해서는 좀 더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과세소득에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처리가 필요할 것임

다. 세무상 기초 유보액 환산

- 세무상 기능통화제도를 최초 적용(변경)하는 경우 방법(3)에 따라 과세소득 환산방법을 택한 경우에는 관련 세무조정 역시 기능통화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화(또는 기존 기능통화)로 표시되어있는 세무상 기초 유보액을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해 주어야 함
- 상기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초재무제표가 기능통화를 최초 적용 및 변경하는 시점의 환율로 환산되는 것이 적합하다면 세무상 기초 유보액 역시 동일한 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타당함
- － 특정 자산·부채에 대한 세무상 장부가액이 여러 개의 환율로 평가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V. 결 론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2009년 1월 기능통화제도가 기업회계기준에 도입되어 외화거래의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재무정보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그런데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능통화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기업회계상 기능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목적으로 원화를 기능통화로 한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함
-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회계상 기능통화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법인세 신고 목적으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음
 - 그리고 세법상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세무상 기능통화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아울러 그 도입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음
- 외국의 사례를 보건대, 미국과 호주의 경우 세법상 기능통화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어 법인세 신고시 과세소득까지를 기능통화로 계산한 후 이를 자국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의 경우 달러 이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 납세자는 과세소득을 계산하기까지 연방소득세법상 소득세 관련 모든 결정(all income tax determinations)을 기능통화로 하여야 함
 - 그러나 소득세 관련 모든 결정을 기능통화로 하더라도 미국에서 세무신고시 보고하는 화폐 기준은 미국 달러임

- 기능통화가 미국 달러가 아닌 경우 기능통화로 계산된 과세소득은 요건을 갖춘 사업단위(QBU)의 해당 과세기간 동안 평균환율을 이용하여 미국 달러로 환산되어야 함
 - 호주의 경우 납세협력비용(compliance cost)을 감소시키고 실무적 필요(commercial practice)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일에 기능통화환산 규정이 도입되었음
 - 기중에는 적정기능통화로 장부를 작성하고 과세연도 종료 시점에 납세자는 적정 기능통화로 과세소득을 계산함
 - 과세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에 적정기능통화로 작성된 과세소득은 호주 달러로 환산되어야 함
- 우리 역시 미국 및 호주의 경우와 같이 납세편의성을 고려하여 세법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 기업회계상 도입된 기능통화제도 관련 세법상 대응조치로는 현행 우리의 조세환경에 비추어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법,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를 따르는 방법,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법은 과세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회계상 기능통화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상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별도로 요구하므로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음
 -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를 따르는 방법과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은 법인세 신고용으로 별도의 장부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납세자의 세무조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적용환율 및 어떠한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리 계산되어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납부세액이 정확하지 않고 과세형평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측면에서는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는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가장 우수하나 이는 납세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요구하므로 미국 및 호주의 사례에서와 같이 회계상 기능통화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세무상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이 때 세무상 기능통화제도의 도입방안으로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 세무를 따르는 방법의 경우 현행제도상 해외사업장에 대한 과세조치와의 균형을 위해서는 우수한 방법이기에는 하나 이보다는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과세소득 환산방법으로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고려해 볼 만함

－ 단, 기능통화 적용대상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통해 과세형평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세무상 기능통화제도를 도입시에는 과세형평 및 실제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세무를 따르는 경우 재무제표 환산시 적용환율과 관련하여 기말환율 또는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식은 납세편의성을 제고할 수는 있으나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 회계상 이익과 이에 기초한 과세소득이 크게 왜곡될 수 있음

－ 따라서 과세기간 중 환율이 급격히 변동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적용환율을 적절히 조정해 주는 입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세소득 환산방식을 택한 경우 세무조정이 기능통화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세법상 원화로 표시된 세무조정 기준금액을 기능통화로 환산하여야 함

－ 이 때 적용할 적정환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기능통화로도 세무조정이 가능한 입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이 외에도 최초 적용기업에 대해서는 기초 재무제표 환산시 발생하는 외환차이가 과세소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이를 과세소득에 반영하시는 시점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참고문헌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홍범교, 『미국의 금융소득과세제도 : 파생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5.
박경호 · 임승연 · 김철봉 · 이창우, 「K-IFRS에 근거한 기능통화 회계제도의 도입효과」, 『회계저널』 제18권 제1호, 2009.3.

CCH, Australian Master Tax Guide, 2009.

CCH, US Master Tax Guide, 2007.

Johns et al., Federal Tax Course, CCH, 2009.

Richard L. Doernberg, International Taxation 7th ed., Thomson West, 2007.

Smith, Ephraim P., Federal Taxation: comprehensive topics, CCH, 2008.

www.ato.gov.au

www.fasb.org

www.ibfd.org

www.irs.gov

www.samili.com

www.westlaw.com

세법연구 09-04

세무상 기능통화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09년 8월 24일 인쇄

2009년 8월 27일 발행

저 자 박명호 · 김태훈 · 정희선

발행인 원 윤 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9

ISBN 978-89-8191-459-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